

2013년도 문화재위원회

제14차 사적분과위원회 회의록

- ▣ 회의일시 : 2013. 12. 11 (수요일), 14:00 ~ 19:50
-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 출석위원 : 김정배, 고혜령, 김권구, 김종일, 노중국,
박소현, 손영식, 이상필, 이상해, 이재근,
임세권, 채미옥, 최성락, 홍승재(이상 14명)
-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 심의사항 】

<문화재(사적) 지정 등>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공개
2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및 명칭 변경	공개
3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 사적 추가지정	공개
<문화재(사적) 현상변경 등>		
4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남산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등	공개
5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게이트볼장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6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부영아파트 신축	공개
7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8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 신축	공개
9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산마루길 확장	공개
10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11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 김포시청 청사 의회동 증축	공개
12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공개
13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도시가스 배관 부설	공개
14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15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내 입목벌채	공개
16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공개
17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도로 개설	공개
18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부잔교 시설물 설치	공개
19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안내판 설치	공개
20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21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등 보호구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공개
22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23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공개
24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개
25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주변 가로등 설치	공개
26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내 오솔길 신설	공개
27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어린이공원 조성	공개
28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가단지) 조성	공개
29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나단지) 조성	공개
30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주변 정자 설치	공개
31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주변 동상 설치	공개
32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민가 부속채 증축	공개
33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요사채 개축	공개
34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공개

35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및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 태양광 발전소 건설	공개
36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건립	공개
37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 유적 내 대형 안내판 설치	공개
38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내외 잡목제거 및 왕벚나무 식재	공개
39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공개
40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	공개
41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42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공개
43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공개
44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공개
45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공개
46	사적 제354호 서울 탐골공원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공개
【 검토사항 】		
1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공개
2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정조대왕 초상 관련 유적 사적 추가지정 민원 타당성 검토	공개
3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검토	공개
【 보고사항 】		
1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안) 보고	공개
2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개선방안 보고	공개

3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성곽 및 동문정비공사 추진계획 보고	공개
4	사적 제199호 선릉 내 장애인 경사로 정비계획 보고	공개
5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내 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계획 보고	공개
6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태릉 수영장 철거지역 조경정비계획 보고	공개
7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계획 보고	공개
8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2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공개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공개

【 심의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14-001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과 3권역에 속하는 20필지 3,507㎡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3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3.10.16.)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지정 예고일 : 2013.10.29.(문화재청 공고 제2013-257호)
 - 지정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지정 예고결과 : 제출의견 없음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지정신청
 - 기존지정 면적 : 904필지 322,297.6㎡
 - 추가지정 신청 면적 : 20필지 3,507㎡
 - 추가지정 후 면적 : 924필지 325,804.6㎡
- (4) 지정사유
 - 풍납동 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동 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3.9.4, 2013.9.13)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서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85	대	89	89	○○○	
2	"	268-24	대	106	106	○○○	
3	"	144-25	대	112	112	○○○	
4	"	126-180	대	184	184	○○○	
5	"	222-42	대	102	102	○○○	
6	"	149-23	대	167	167	○○○	
7	"	271-27	대	148	148	○○○	
8	"	270-18	대	164	164	○○○	
9	"	142-71	대	136	136	○○○	
10	"	293-13	대	116	116	○○○	
11	"	268-30	대	139	139	○○○	
12	"	141-45	대	99	99	○○○	
13	"	257-79	대	126	126	○○○	
14	"	89-88	대	123	123	○○○	
15	"	126-190	대	1,031	1,031	○○○	
16	"	94-22	대	185	185	○○○	
17	"	221-18	대	136	136	○○○	
18	"	142-43	대	122	122	○○○	
19	"	155-9	대	100	100	○○○	
20	"	131-6	대	122	122	○○○	
합계				3,507	3,507	○○○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2. 파주 소령원, 파주 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및 명칭 변경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358호 「파주 소령원」, 제359호 「파주 수길원」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및 사적명칭 통합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소령원·수길원의 유적 영역인 39필지 47,754㎡를 사적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 및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과 구역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3년 문화재위원회 제12차 회의('13.10.16.) 검토를 거쳐 지정예고
 - 예고 일 : 2013.10.29.(문화재청 공고 제2013-272호)
 - 예고기간 : 지정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제출의견 :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전체 면적에 대하여 추가지정 반대하며 의견 제출자(○○○, ○○○, ○○○, ○○○) 소유 토지는 추가 지정 면적에서 제외시켜주기 바람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8-5	전	1,048	○○○
2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8-42	대	1,253	○○○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소령원(사적 제358호),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1991.10.25. 지정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 일원 / 관리단체 : 파주삼릉관리소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파주 소령원 : 14필지 231,515㎡
 - 파주 수길원 : 3필지 294,420㎡
 - 추가지정 면적 : 39필지 47,754㎡

- 추가지정 후(사적 명칭 통합) 면적 : 55필지 573,689㎡
 - 중복 지정에 따른 조정(영장리 산1-15번지)으로 1필지 감
- 명칭 통합 후 문화재명 : 파주(坡州) 소령원(昭寧園)과 수길원(綏吉園)

(4) 지정사유

- 파주 소령원·수길원의 유적 영역인 39필지 47,754㎡를 사적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하고, 문화재의 역사성과 특성을 고려하여 지정 명칭과 구역을 통합하여 세계유산인 조선왕릉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보존관리 필요

라. 지정조사보고서(2013.8.30./문화재위원 ○○○, ○○○, 전문위원 ○○○)

1. 문화재 종류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58호(1991.10.25 지정)
-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359호(1991.10.25 지정)

2. 문화재 명칭

- 파주 소령원
- 파주 수길원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에 위치하고 있는 소령원, 수길원은 북쪽으로 발랑리와 송추CC가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CC, 서울시립공동묘지가 있으며 서쪽으로는 마장리가, 동쪽으로는 기산리가 위치하고 있음
- 소령원과 수길원 지구는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영역이 축소되고 능역 내 사유지 점유, 주변골프장 및 도로개설 등으로 경관이 훼손된 실정임

4. 연혁 유래 및 특징

- 소령원
 - 조선 19대 숙종(재위 1674~1720)의 후궁이며 21대 영조(재위 1724~1776)의 어머니인 숙빈최씨의 무덤이다.
 - 숙빈최씨는 1670년(현종11년)11월 최효원의 딸로 태어나 7세에 궁에 들어가 숙원·숙의·귀인을 거쳐 숙빈에 봉해지고, 1694년(숙종20년)영조를 낳았다.
 - 1718년 3월 49세로 죽어 서울 궁정동 칠궁안에 사당을 짓고 그 묘호를 육상, 묘호를 소령원이라 하고 묘비는 1744년 영조가 친히 썼다.
 - 봉분주변에는 혼유석 등 여러 석물이 있고 정자각과 비각이 있으며, 능역 진입로에는 신도비가 있다.

○ 수길원

- 조선 21대 영조(재위 1724~1776)의 후궁인 정빈이씨(1693~1720)의 무덤이다. 정빈이씨는 영조의 맏아들인 효장세자(진종 : 정조의 양아버지)를 낳았다.
- 봉분 주변을 둘러싸는 곡장이 있으며, 비석과 문인석을 비롯하여 여러 석물들이 있다. 위패는 조선시대 역대 왕이나 추존된 이의 생모인 후궁들의 위패를 모신 칠궁의 하나인 연호궁에 안치되어 있다.
- 남서쪽 아랫부분에 남서방향으로 정자각을 세웠으나 현재 기단부만 남아 있으며 수복방도 주춧돌만 남아있다.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세계문화유산인 파주 소령원, 파주 수길원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수행을 위한 사적 추가지정과 사적통합·지정명칭 변경

6. 지정 대상 및 범위

- 해당 문화재구역 내부의 사유지
 - 현행 지정면적 : 17필지, 525,935㎡(소령원 14필지, 231,515㎡/수길원 3필지, 294,420㎡)
 - 추가 지정면적 : 39필지, 47,754㎡(현 문화재구역 내부의 미 지정구역/1구역)
 - 지정 후 면적 : 55필지, 573,689㎡(중복 지정에 따른 조정(산1-15번지), 1필지 감)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추가지정 대상지는 현행 문화재구역 내부에 위치하며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1구역임.
- 북측 문화재구역 외부로 일부 확대(영장리 268-4 등)되어 조정이 필요한 문화재보호구역은 추후 문화재보호구역 적정성에 검토에 포함하여 조정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조선왕릉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및 소령원, 수길원 능제복원 기본 계획에 따라 보존관리

9. 종합 의견

- 조사지역은 조선의 21대왕 영조의 모친인 숙빈 최씨의 소령원과 22대왕 정조의 양부 추존왕 진종의 모친 정빈이씨의 수길원이 인접한 지역으로 통합 보존관리와 문화재구역 확대지정이 요구되는 지역임
- 일반적으로 인접한 조선왕실의 능·원·묘의 명칭과 관리는 홀수의 능원은 수자에 따라 명칭을 부여하며, 짝수의 능역은 명칭을 능원의 명칭을 직접 부여하여 호칭하고 있음. 예를 들면 능원의 수자가 홀수인 구역은 동삼릉, 동오릉, 동칠릉, 동구릉, 서삼릉, 서오릉 등으로 부르고, 짝수의 능역은 태릉과 강릉, 선릉과 정릉 등으로 호칭하고 관리하고 있음. 따라서 소령원과 수길원도 고부간의 관계로 한 구역에 입지하여 통합관리가 요구되는 지역으로 하나의 사적으로 하여 통합관리 할 필요가 있음

- 현 소령원(사적358호)과 수길원(사적359호)은 문헌조사 결과 인접한 능역이며, 재실을 통합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바 하나의 구역으로 하여 하나의 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 현 추가 지정이 요구되는 지역은 통합재실이 있던 곳으로(39필지, 47,754㎡) 능역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 문화재구역 1구역), 재실 터로 추정되는 지역임. 현재는 가정주택 및 축사가 1-2동 존치하고 있으며 농지로 활용되는 지역임
축사와 난개발 등의 우려가 있어 역사경관 보존에 영향이 큰 지역으로 사료됨. 이 지역은 소령원과 수길원의 재실 등 문화재 시설이 있던 지역으로 문화재 구역 지정 및 사유지 매입을 통한 문화재 보존 및 관리가 요구됨
- 일부사적의 경우 능역의 사신사(四神山) 및 안산(案山)에 저축을 받지 않는 구역은 사유권 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사신사 및 안산 등의 검토가 요구됨

과주 소령원·수길원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8-7	답	502	502	○○○	
2	"	268-9	대	660	660	○○○	
3	"	268-43	답	963	963	○○○	
4	"	268-23	전	774	774	○○○	
5	"	268-11	전	109	109	○○○	
6	"	268-10	전	337	337	○○○	
7	"	270	답	4,099	4,099	○○○	
8	"	268-24	답	473	473	○○○	
9	"	268-25	전	1,332	1,332	○○○	
10	"	269-1	전	1,643	1,643	○○○	
11	"	268-26	전	185	185	○○○	
12	"	269-3	전	1,643	1,643	○○○	
13	"	268-32	전	1,038	1,038	○○○	
14	"	268-33	전	1,213	1,213	○○○	
15	"	268-34	전	304	304	○○○	
16	"	268-27	전	1,213	1,213	○○○	
17	"	269-2	전	3,547	3,547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소유자	
						성명	주소
18	"	268-28	전	1,190	1,190	○○○	
19	"	268-31	전	879	879	○○○	
20	"	268-29	전	1,318	1,318	○○○	
21	"	268-41	전	308	308	○○○	
22	"	268-30	전	1,147	1,147	○○○	
23	"	268-35	전	807	807	○○○	
24	"	268-36	전	2,945	2,945	○○○	
25	"	268-38	전	635	635	○○○	
26	"	268-40	전	595	595	○○○	
27	"	291-8	전	803	803	○○○	
28	"	268-4	답	2,017	2,017	○○○	
29	"	산1-8	임	2,715	2,715	○○○	
30	"	268-42	대	1,253	1,253	○○○	
31	"	268-5	전	1,048	1,048	○○○	
32	"	268-17	답	1,719	1,719	○○○	
33	"	268-16	답	3,038	3,038	○○○	
34	"	268-12	답	621	621	○○○	
35	"	268-13	답	331	331	○○○	
36	"	268-14	답	1,554	1,554	○○○	
37	"	268-20	답	1,266	1,266	○○○	
38	"	268-15	대	846	846	○○○	
39	"	268-6	전	684	684	○○○	
합계		39필지		47,754	47,754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3. 익산 제석사지 사적 추가지정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익산시 소재 사적 제405호 「익산 제석사지」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익산 제석사지 유적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된 구역을 문화재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예 고 일 : 2013.10.31.(관보 제18130호 / 문화재청 공고 제2013-277호)
 -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제출의견 : ○○○ / 왕궁리 153번지 추가지정 제외 요망
 - 당 지번은 제석사지 유구 예상 배치 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 당 지번을 제외하고도 계획된 주차장, 진입로 등 정비사업 추진에 전혀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본 대지는 약 300년 전에 본인의 선조가 입향(入鄕)하여 현재까지 세거(世居)한 유서깊은 고택지로서 영구 보존되기를 바램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 / 1998.5.11 지정
 - 소 재 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 기 지정 면적 : 62필지 25,432㎡
 - 추가 지정 신청면적 : 57필지 21,672㎡
- (4) 지정신청사유
 - 발굴조사 결과 제석사지 사역(寺域) 규모가 현 문화재구역의 외곽에 존재함이 확인되었고,
 - 제석사가 639년 소실되고 재건되는 과정에서 화재 폐기물을 매립한 폐기장 유적(현 익산시향토유적 제2호) 또한 사역의 범주로 간주하여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하고자 함

라. 지정조사보고서(2013.10.7./문화재위원 ○○○, 前 문화재위원 ○○○,
전남대학교 교수 ○○○)

(1) 문화재 종류

- 사적 제405호

(2) 문화재 명칭

- 익산 제석사지(益山 帝釋寺址)
- 소재지 : 전라북도 익산시 왕궁면 왕궁리 247-1번지 일원

(3) 입지 현황 및 역사문화환경

- 익산 제석사지(사적 제405호)는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경영)과 관련 왕실 사찰터로 주목되어 왔다. 백제 무왕대에 조성된 왕궁성(사적 제408호 “익산 왕궁리 유적”)에서 1.4km 떨어져 있으며, 인근에 국찰인 미륵사지를 비롯해 연동리사지, 사자사지, 백제시대 조성된 성곽(익산토성, 도토성, 낭산산성 등), 익산쌍릉, 백제토기도요지 등 다양한 백제역사유적지들이 집적되어 있음.
- 제석천을 주준으로 모시는 제석사는 제석신앙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제석은 불교의 우주관에서 보면 수미산 정상인 도리천에 거주하는 천주로서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인간의 선악을 주재하는 신으로, 제석신앙을 위한 불당은 왕궁 내에 있거나 왕궁 가까운 곳에 건립되었는데 익산 제석사는 왕궁에서 동쪽으로 1.4km 떨어진 궁평(궁뜰)에 위치해 있음.

(4) 연혁 유래 및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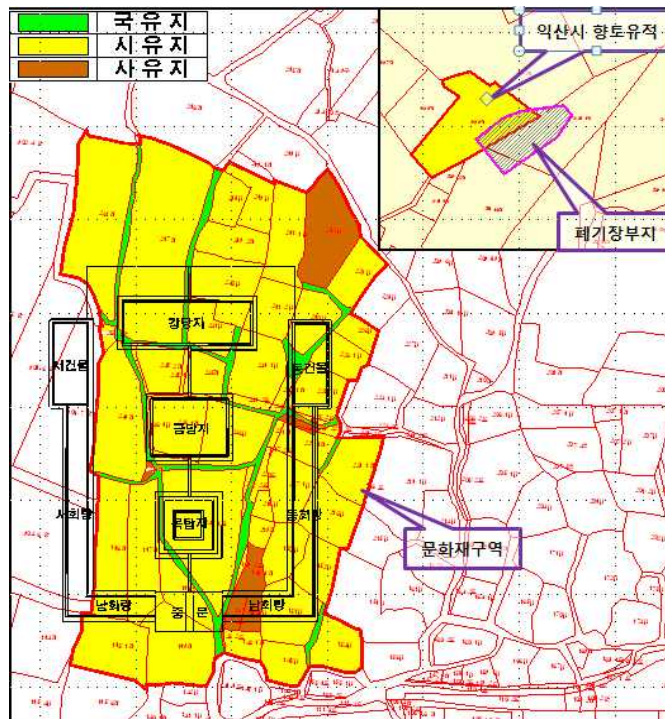
-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하면 백제 무왕대에 창건된 것으로 나와 있다. 무왕 40년(정관(貞觀)13년 서기 639년)에 벼락으로 폐사(전소)되었으나 탑 아래 심초석에 넣어 두었던 불사리와 동판금강반야경을 넣었던 칠함만이 보존되어 다시 사찰을 지어 안치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음.
- 1993년 제석사지 시굴조사를 통해서 백제시대 전형적인 1탑 1금당의 가람 배치가 확인되었으며, 연화문수막새, 특히 백제계암막새인 인동당초문암막새, 제석사명·정역사명 명문와 등이 출토되었고, 1998년 사적 제405호로 지정됨.
- 이후 왕궁리 와요지로 전해지던 제석사지 북동편 지역에 대한 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7세기 전반의 연화문수막새, 소조상, 벽체 파편 등이 수습되었는데 대부분의 유물들이 불에 타 불게 산화된 상태여서 와요지가 아닌 제석사 화재 당시(639년) 화재 폐기물을 매장한 폐기장임이 확인됨.
- 백제의 익산 천도 또는 별도설 등과 관련해 왕궁성, 미륵사지와 밀접한 관련성이 제기되면서 제석사지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2007년~2012년까지 3차에 걸친 발굴조사로 동서 112m, 중문과 승방 간 거리는 168m로 백제사찰 중 단일구조로서는 최대규모로 밝혀짐.

(5) 지정 가치 및 근거기준

- 제석사지는 몇 개 남아있지 않은 백제사찰지로서의 중요성과 함께 문헌기록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해 창건과 폐사연대를 알 수 있고, 무왕대에 익산천도의 사실을 밝혀줄 수 있는 왕궁평 유적과 관련된 유적으로서, '93년 실시한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의 발굴(시굴)조사 결과,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등의 기단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에서는 처음으로 암막새가 출토되어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유적임.
- 3차 발굴조사 결과 서회랑지와 서건물지가 위치한 부지가 문화재구역 외곽에 위치해 있음이 확인되었고, 중문지 남측 현재 민가가 밀집 분포된 지역에 대한 조사 역시 요구되는 상황으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이 시급함.
- 또한 승방지로부터 300m 정도 이격된 곳에 위치한 제석사지 폐기장은 2004~2005년 시굴조사를 통해 639년 뇌우로 불에 탄 제석사 화재 폐기물 (건축물의 흔적으로 벽체편, 벽돌, 홍두께 흙, 불덩이나 탑에 모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소조상편 등)을 매립한 유적으로, 향후 익산 제석사를 건축사·미술사·종교사적으로 규명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들이 매장되어 있는 곳이므로 훼손 방지를 위해서라도 제석사지와 연계하여 사적지로 추가 지정하여 보존 관리되어야 할 것임.

(6) 지정 대상 및 범위

- 제석사지 현 지정구역과 발굴유적 현황도



- 추가지정 범위
- 사역 : 56필지 18,571㎡
- 폐기장 : 4필지 4,743㎡



(7) 문화재 보존 영향 행위기준(안)

- 사역 추가 지정으로 확대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허용기준은 현행 기준을 연장하여 적용하고, 폐기장 유적이 지정됨에 따라 확대된 지역은 익산시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2구역	○ 제석사 폐기장유적으로 신축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시 발굴조사 선행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4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5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허용기준	
구분	평스라브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신축 및 시설물 설치 불가, 기존 건물 범위 내 개·재축 허용 - 개·재축 터파기시 관련전문기관 입회하에 실시	
2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7.5m 이하 (1층 이하) - 농가주택 및 농가창고에 한함	
3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2층 이하)	○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2층 이하)
4구역	○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 사항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한다.	

(8) 보존 정비 및 활용 착안사항

○ 정비계획

1단계 정비사업	2단계 정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3~17년 - 토지매입(추가지정 구역) - 원형 규명을 위한 발굴조사 - 사지 중심영역 정비(목탑·금당·강당지 등) - 사역 주변 정비(임시주차장, 탐방로, 안내판 설치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간 : 2018~22년 - 승방지 및 추가 발굴된 건물지 정비 - 제석사 폐기장 발굴 및 정비 - 사역 외부 정비(전망대, 주차장, 탐방로 및 광장, 배수시설 등) - 사역 및 주변 조경, 편의시설(화장실, 휴게·조명·통신·유적안내소)

- 백제역사유적지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에 따라 대내외 탐방객들의 문화유산에 대한 이해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세계적인 역사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 제석사지 정비 조감도(익산 제석사지 종합정비기본계획, 2012) >

(9) 종합 의견

- 익산 제석사지는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와 관련된 왕실 사찰터로서 문헌기록 『관세음응험기(觀世音應驗記)』에 의해 창건과 폐사 연대를 알 수 있고, 목탑지, 금당지, 강당지 등의 기단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백제유적에서는 처음으로 암막새가 출토되어 백제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제공해 준 유적임
- 제석사지 정비사업 일환으로 추진된 발굴조사 결과 서회랑과 서편 건물지 등이 현 문화재구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확대 지정이 필요하며,
- 639년 뇌우로 불에 탄 제석사 화재 폐기물을 매립한 폐기장 또한 당시의 벽체편, 기와, 법당이나 목탑 안에 모시거나 장엄했던 각종 소조상 편들이 출토된, 제석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 매우 귀중한 유적이므로 그 범역을 사적으로 지정하여 보존·관리함이 타당함

- 이로 미루어 볼 때 지자체에서 신청한 추가지정 계획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나, 사역의 경계와 문화재구역의 경계가 접하는 부분(153번지/대)과 사역 북편(233번지/대, 239-1번지/전)은 가람배치의 여유공간 확보를 위해 추가지정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함
- 문화재구역 확대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은 현행 기준을 적용하여도 문화재 주변 경관 관리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마. 참고사항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3.7.5.)

- 그간의 발굴조사 및 종합정비계획을 반영한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계획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동회랑과 남회랑이 접하는 부분(왕궁리 153대)은 사역의 경계와 문화재 구역 경계가 중첩되므로 ‘왕궁리 153대’ 필지를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제석사지 가람배치 도면은 최근에 발간된 「帝釋寺址 발굴조사보고서Ⅱ」를 참고하여 향후 정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람

(2) 전라북도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2013.9.13.)

- 문화재 보존을 위하여 신청안(57필지, 21,672㎡)대로 추가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고도 경관을 위해 행위기준(안)의 3구역의 기준인 평지붕을 경사지붕으로 조정 필요

익산 제석사지 문화재구역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1	왕궁리	105-15	전	269	46	○○○	
2	왕궁리	105-16	전	25	25	○○○	
3	왕궁리	105-2	도	40	31	○○○	
4	왕궁리	105-3	도	54	11	○○○	
5	왕궁리	105-4	천	7	4	○○○	
6	왕궁리	111-1	도	10	10	○○○	
7	왕궁리	111-11	답	190	189	○○○	
8	왕궁리	111-12	대	163	161	○○○	
9	왕궁리	111-13	답	947	945	○○○	
10	왕궁리	111-14	도	21	9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11	왕궁리	111-15	도	8	2	○○○	
12	왕궁리	111-4	도	3	3	○○○	
13	왕궁리	111-5	도	3	3	○○○	
14	왕궁리	111-6	답	112	112	○○○	
15	왕궁리	111-8	도	205	201	○○○	
16	왕궁리	111-9	도	988	21	○○○	
17	왕궁리	112-1	도	13	13	○○○	
18	왕궁리	112-2	대	73	73	○○○	
19	왕궁리	120-1	도	60	60	○○○	
20	왕궁리	120-4	도	76	76	○○○	
21	왕궁리	120-7	답	75	75	○○○	
22	왕궁리	120-9	도	26	14	○○○	
23	왕궁리	133	대	1,203	1,203	○○○	
24	왕궁리	134	전	843	843	○○○	
25	왕궁리	135-4	대	714	714	○○○	
26	왕궁리	135-5	대	436	436	○○○	
27	왕궁리	135-6	전	891	891	○○○	
28	왕궁리	140-1	천	278	278	○○○	
29	왕궁리	140-2	도	76	76	○○○	
30	왕궁리	140-3	답	17	17	○○○	
31	왕궁리	141-1	대	235	235	○○○	
32	왕궁리	141-2	도	3	3	○○○	
33	왕궁리	142	대	155	155	○○○	
34	왕궁리	143-1	대	426	426	○○○	
35	왕궁리	143-2	도	3	3	○○○	
36	왕궁리	143-3	도	20	20	○○○	
37	왕궁리	144-1	전	40	40	○○○	
38	왕궁리	144-2	도	20	20	○○○	
39	왕궁리	155-1	대	192	192	○○○	
40	왕궁리	155-2	도	23	23	○○○	
41	왕궁리	155-3	도	13	13	○○○	
42	왕궁리	223-2	도	23	23	○○○	
43	왕궁리	224-1	대	522	522	○○○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지정 면적 (㎡)	소유자	
						소유자	주소
44	왕궁리	224-2	도	17	17	○○○	
45	왕궁리	227	대	701	701	○○○	
46	왕궁리	228	대	393	393	○○○	
47	왕궁리	746	도	6,957	841	○○○	
48	왕궁리	903-6	답	1,566	1,566	○○○	
49	왕궁리	903-7	답	1,712	1,712	○○○	
50	왕궁리	904-6	답	2,495	2,495	○○○	
51	왕궁리	923	구	1,094	259	○○○	
52	왕궁리	924	도	1,155	305	○○○	
53	왕궁리	925	구	1,850	423	○○○	
54	왕궁리	233	대	651	651	○○○	
55	왕궁리	239-1	전	89	89	○○○	
56	왕궁리	153	대	902	902	○○○	
계(사역)		56필지		29,083	18,571	○○○	
57	왕궁리	30-9	전	2,122	2,122	○○○	
58	왕궁리	산28-1	임	1,983	1,583	○○○	
59	왕궁리	209-16	전	2,955	596	○○○	
60	왕궁리	30-2	전	7,902	442	○○○	
계(폐기장)		4필지		14,962	4,743	○○○	
합 계		60필지		44,045	23,314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왕궁리 153번지는 제석사지 정비사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필지 분할하여 지정하도록 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4.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 남산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등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외에서 남산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등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기존 케이블카(48인승 입식 왕복식 삭도)를 곤돌라(8인승 좌식 자동순환식 삭도)로 변경하고 그에 따라 곤돌라 승강장 신축 등을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 <남산케이블카 상부승차동 증축 등>
 - 위치 : 서울특별시 중구 예장동 산5번지 6호(문화재보호구역 내외)
 - 사업내용

구분		기존	변경	비고
케이블카 운영		48인승 왕복식 시간당 약 600명 수송 3.2m/sec 선로길이 605m	8인승 자동순환식 20대 시간당 약 1,500명 수송 13.5m/sec 선로길이 558.0m	
상부 승차동	대지면적	1,539.40㎡	좌동	
	건축면적	439.90㎡	689.64㎡	증 249.97㎡
	연면적	1,033.39㎡	1,199.52㎡	증 166.13㎡
	층수/ 건물높이	지상1층, 지상3층/13.06m	지상1층, 지상3층/11.96m	높이 감 1.10m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구조	
포스트1		높이 19.32m 철골트러스 구조 기초 1500*800*1000(4개)	높이 19.85m 원형파이프 구조 기초 2000*2000*1500(1개)	
포스트2		높이 13.895m 철골트러스 구조 기초 1500*800*1000(4개)	높이 13.68m 원형파이프 구조 기초 2000*2000*1500(1개)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6/ 문화재위원 ○○○, ○○○)

- 남산케이블카는 1962년에 준공되어 51년째 사용하는 시설로 건물과 장비가 노후되고 또한 관광객이 증가되어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기존 케이블카를 곤돌라 형식으로 변경하는 등 시설을 전반적으로 변경하고자 신청한 사항으로 케이블카의 노후, 관광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부승강장 등 기존시설이 서울 한양도성(사적), 목멱산봉수대터(서울시 기념물) 등이 인접하여 있으므로 기존시설과 비교하여 재축되는 상부승강장의 규모 및 외관, 포스트의 형태 등이 문화재 및 문화재 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외관 디자인은 관계전문가 검토를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5. 서울 풍납동 토성 내 게이트볼장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 문화재구역 내에 게이트볼장 등을 설치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신청지역은 풍납토성 외곽 문화재구역에 해당하는 곳으로 2013. 8월 운동기구 설치 및 잔디식재가 허가된 지역으로 이번에 게이트볼장 설치, 운동기구 설치 및 잔디식재로 변경하고자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43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게이트볼장 등 설치(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238-10(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게이트볼장 설치 : 15m×13m
 - 운동기구 설치 : 6개소
 - 잔디식재 : 1,164m²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실시 전까지만 한시적으로 허용
 - 운동기구·놀이기구 설치사항은 문화재청에서 검토 처리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6. 관문성 주변 부영아파트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부영아파트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관문성 주변에 공동주택(부영아파트) 48개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산업로 1739-6,
울산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모화리)
- (3) 신청내용 <부영아파트 신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1410번지 외 35필지
 - ※ 허용기준 변경 예정지역(평지붕 29m이하, 경사지붕 33m이하) / 문화재구역에서 190m 이격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22,342㎡, 총 건축면적 19,838.79㎡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최고높이 84.81m
 - 총 48개동(3,460세대)
 - 15개동 : 지상 30층, 최고높이 84.81m
 - 14개동 : 지상 25층, 최고높이 70.81m
 - 19개동 : 지하 2층~지상 2층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1.19/문화재위원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〇〇〇, 전문위원 〇〇〇)

- 본 건물은 경주 관문성에서 200여m 이격된 4구역(평지붕 11m, 경사지붕 15m(경상북도 조례에서 정한 도시계획에 의해 주·상·공 지역에서 행해지는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 행위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득하도록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평지붕 29m, 경사지붕 33m 이하로 현상변경허용기준 변경 중인 지역임))에 문화재와 가까운 곳은 2단지(25층 규모 70.81m의 아파트 14개동, 지상 2층 8.3m~9m 규모의 관리동 등 2개동, 지상1층 3.6m~5.6m 경비실 등 6개동, 지하 2층 지하주차장. 합 23개동), 먼 곳은 1단지(30층 규모 84.81m의 아파트 15개동, 지상 2층 8.3m~9m 규모의 관리동 등 3개동, 지상1층 3.6m~5.6m 경비실 등 6개동, 지하 2층 지하주차장. 합 25개동)로 조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지조사에서는 단면도 등을 통해 문화재와 신축 부지, 그리고 신축 건축물과의 지형관계를 이해하기 어려웠으며,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화재에서 신축 부지와 건물, 신축 부지와 건물에서 문화재가 어떻게 인지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워, 이러한 사항을 차기 문화재위원회 심의 시 보완하여 제출하기를 바라며, 이러한 사항을 근간으로 문화재 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7.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허가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재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및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1) 사적 제48호 관문성 주변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이화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조건부 허가('13. 4월)함에 따라, 허가조건 중 '조경' 분야 실시설계에 대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별건으로 (신규) 신청함
 ※ 허가조건 : 건축·조경 등 실시계획서와 주요 조망지점에서의 성곽·도로·건축물·절토면에 대한 3D 공간 시뮬레이션은 문화재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함
- (2) 당초 허가사항 중 토지이용계획(산업단지 내 진입도로 등 개설, 저류지 위치변경, 허가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변경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관문성(사적 제48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외동읍 모화리 산122, 울산광역시 북구 달천동, 중산동, 천곡동 및 범서면
- (3) 신청내용
 - 위치 : 울산광역시 북구 중산동 323-2번지(1구역/문화재구역 연접)

가) 일반산업단지 내 '조경' 계획(허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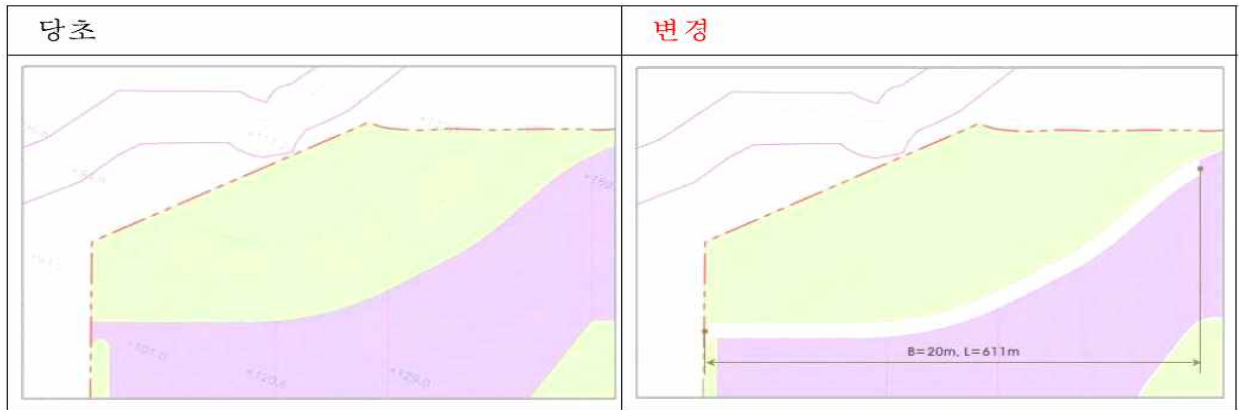
- 주요 내용
 - 사업지내 식생하는 수종으로 조경식재 계획 수립
 - 사업지 주변에 식생하고 있는 수목 식재를 이용한 친환경 생태복원공법 도입
 - 사업지에서 발생하는 전석을 이용한 자연석 쌓기 반영

구분		수량	단위	비고
합계		23,193	-	
교목	상록교목	454	주	
	낙엽교목	1,189	주	
관목		21,550	주	

나) 일반산업단지 토지이용계획 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 내부 진입도로 신설 (도로폭 20.0m, 연장 611.0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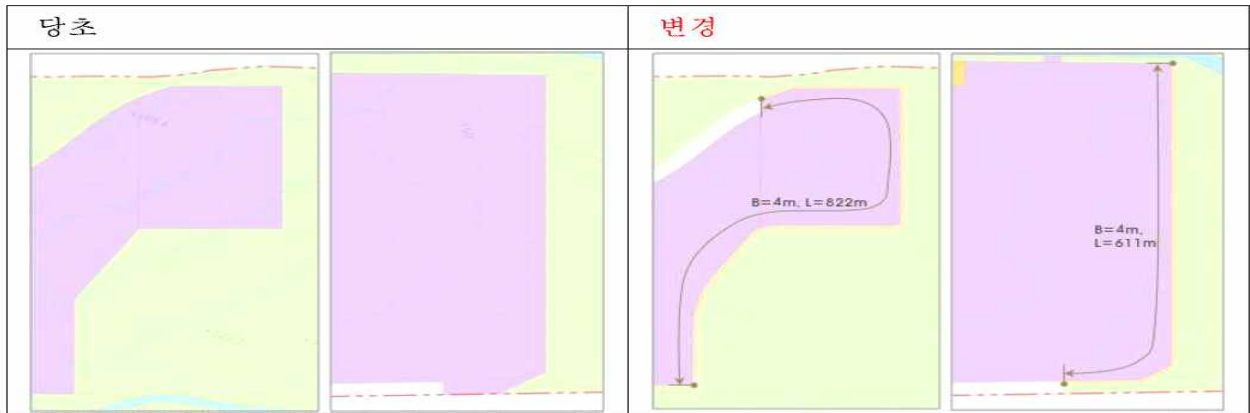
- 당초계획은 대로(폭 30m)에서 공장부지로 진입토록 계획하였으나, 표고차이로 인해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하여 산업단지 북측으로 위치 조정



중로 2-1호선

○ 지구경계 법면 관리용 도로 신설(도로폭 4.0m, 연장 1,433.0m, 황토포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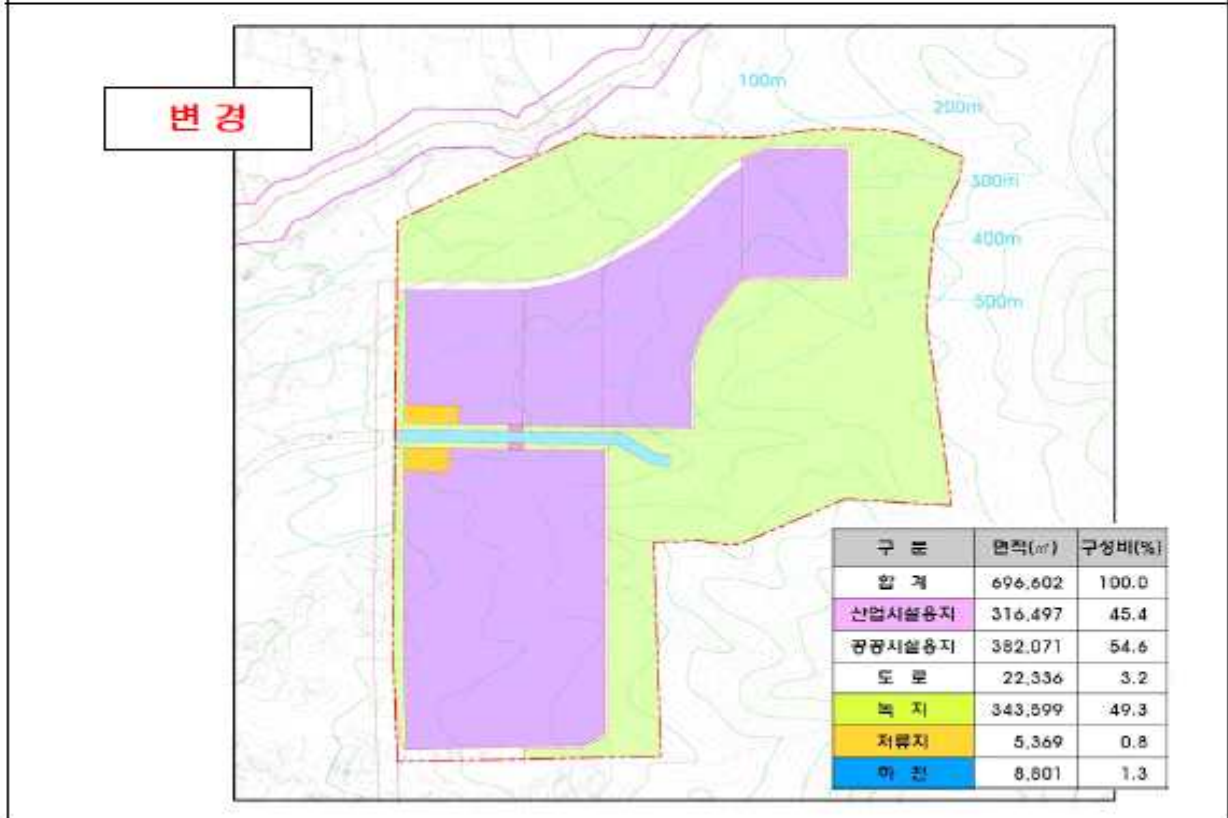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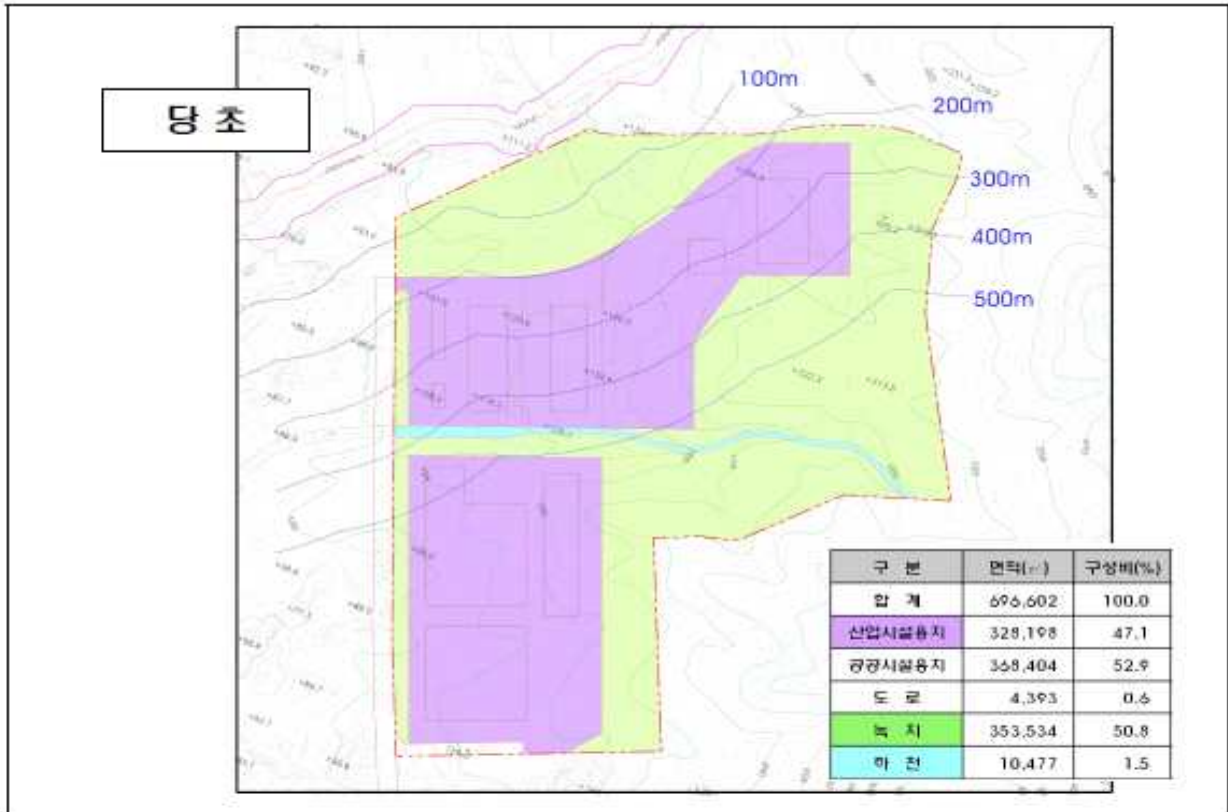
- 산업단지 내 종사자들의 산책로 및 사면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행자도로 신설



○ 저류지 위치 조정

- 당초 관문성 200m 이내에 계획된 지하저류조를 산업단지 운영시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200m 외곽 하천변으로 위치 조정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3. 4. 29 ~ 2014. 4. 28 (1년)
- (변경) 2013. 4. 29 ~ 2018.12. 31 (5년 8개월)

라. 참고사항

(1) 울산시, “조경 계획”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문화재위원 ○○○(‘13.11.12)

- 전체적으로 녹지복원 및 조경설계 계획은 해당 문화재와 200m 이상 띄우고 녹지율을 49% 이상으로 하고 자연생태복원기법을 사용하는 등 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판단됨
- 곰솔과 소나무 등은 절토지역 이식수목으로 식재하였고 다른 교목류의 식재도 원식생지에서 자생하는 수종들을 많이 배치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절토부의 녹화공법도 유기질비료와 고화재를 혼합한 매토종자를 이용함으로써, 자연생태복원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다만, 상수리나무 H3.5*R10 121주, 산벚나무 H3.5*R8 422주 등은 재료수급이 가능한지를 보고 재고하기 바람. 또한 낙엽관목류 수종이 너무 단순하므로 좀더 다양하게 보강을 하고 지피식물의 보완 등으로 다층식재가 되게 할 필요가 있음
- 추후 조경시설물 설치는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자연소재를 이용한 친환경적인 시설로 할 수 있도록 할 것

○ ○ ○ ○ 교수(동국대학교/ ‘13.11.7)

- 수직 옹벽 전면부를 교목과 아교목, 관목으로 구성된 다층식재를 하여 옹벽의 인공구조물이 주는 이질감을 완화시켜주고 자연경관을 조성하였음
- 녹지대 주 수종을 곰솔과 소나무 등 절토지역 이식 수목으로 식재하였고 원식생지에서 주로 자생하는 상수리나무, 때죽나무, 팽나무, 산벚나무와 소나무 등으로 식재하여 원식생과 유사한 녹지환경을 조성하였음
- 절토부의 녹화공법은 원식생지 산림표토를 선별하여 유기질 비료와 고화재를 혼합하여 매토종자를 이용한 자연생태숲복원공법을 선정하여 일반 비탈면 녹화공법보다는 공사비가 많이 증액되나 공사 후 원식생과 유사한 생태복원이 가능한 신공법을 채택하였음

마. 의결사항

○ 보류

-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8.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00m 이격된 곳에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건물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13.10.16)되어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구리유통종합시장 건물 신축>
 -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430번지 일대(6·7구역)
 - 6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45m(15층 이하)
 - 7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의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54m(18층) 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내 용		비고 (1차↔금회 대비)
	1차('13.10.16/부결)	금회('13.12.11)	
대지현황	위치	인창동430번지 일대	좌동
	지역,지구	일반상업 / 방화지구	좌동
	대지면적	39,900㎡	좌동
건축규모	연면적	409,860.5㎡	388,296.5㎡
	건축면적	25,300.76㎡	25,300.76㎡
	주용도	공동주택 판매·업무	좌동

구 분		사 업 내 용		비 고 (1차↔금회 대비)
		1차('13.10.16/부결)	금회('13.12.11)	
	층수/ 규모	지하 5층/지상 15층(6동) 지상 45층(2동)	지하 5층/지상15층(6동) 지상 35층(2동)	최고층(2동) 10층, 감
	최고높이	150m	115m	35m, 감
현상변경 허용기준	6구역	지상 15층(5동)	지상 15층(5동)	
	7구역	-	지상 15층(1동)	
	구역 외	지상 15층(1동) 지상 45층(2동)	지상 35층(2동)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3.10.02/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사업은 구리시 조선왕릉(동구릉) 세계문화유산 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된 지역으로 구리시 현상변경허용기준 6구역에 15층(높이 45m) 건물 6개동이 위치함
- 문화재보존영향검토구역(500m) 경계 외곽지역에 45층(높이150m) 2개동의 주상복합건물은 동구릉 내 원릉과 송릉에서 보았을 때 너무 높게 가시되므로 역사경관을 크게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신청한 서류에 따르면 능역에서의 가시권(양각, 수평각, 수직각 등) 및 스카이라인 등의 분석이 분명하지 않아 향후 현상변경 내용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없으므로 동구릉 묘역에서 가시 되는 경관 시뮬레이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으로 작성·보완할 필요가 있음
- 현지조사 결과 원릉과 송릉, 혜릉의 조산을 가시 할 수 있는 전경관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구리 유통종합시장 건축이 실시될 경우 현상변경에 따른 문화재경관 보존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현지조사 의견('13.12.06/ 문화재위원 ○○○)

- 본 건은 구리 유통종합시장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현상변경허용기준 6구역과 7구역에 15층(45m)건물이 7개동이 위치하며 문화재 보존영향검토구역(500m) 경계 외곽지역에 35층(115m) 건물 2개동이 위치함
- 당초 45층(150m)에서 층수를 낮춰 35층(115m)로 조정하였으나 송릉과 원릉에서 바라볼 때 16개 층이 조망되므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조망권 저해 등 경관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9. 구리 동구릉 주변 산마루길 확장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산마루길을 확장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40m 이격된 곳에서 국도 43호선(구리시립 묘지 입구)과 갈매보금자리지구를 연결하는 산마루길(중로1-11호)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산마루길 확장 공사>
 - 위치 : 경기 구리시 사노동198-5외 106필지(1·2·4·5구역)
 - 사업내용
 - 연장 : L=1.78km(4차선:L=1.25km, B=13m / 2차선:L=0.53km, B=7m)
 - 폭원 : B=20m(4차선: 편도 B=6.5m, 중앙분리대 0.5m / 2차선: 편도 B=3.5m, 중앙분리대 6.5m)
 - ※ 기존 도로 B=12m
 - 기존 도로(1.78km) 포장 철거 후 아스콘 확·포장
 - 보행도로 및 자전거도로 : 편도B=3.25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06./문화재위원 ○○○)

- 신청지는 구리 동구릉 북측에 위치한 산마루길(중로 1-1호선)로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약 140m 이격되어 있음
- 현상변경허용 1,2,4,5 구역에 위치함
- 국도 43호선 공설묘지입구에서 국도 47호선 갈매역까지 연결되는 2차선도로임
- 구리시에서 추모공원, 갈매보금자리 조성에 따른 차량 및 이용자 증가에 따라 노선을 4차선으로 확장하고자 신청하였음
- 대부분 기존 노선을 따라 확장하는 계획이나 일부 구간은 노선을 변경하여 임야훼손이 수반됨
- 동구릉에서는 조망되지 않음
- 동구릉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사료됨

(2)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2013.10.28/한양대학교 문화재연구소)

- 유물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지형조건으로 보아 매장문화재 및 건조물 문화재가 부존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여 사업이 진행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조사되었음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0. 구리 동구릉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286m 이격된 곳에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동 건물은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부결(1차 '12.4.18/2차'12.6.13/3차'13.5.15)되어 신청인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여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04번지 등 11필지(5구역, 7구역)

- 5구역 : 건축물 최고 높이 29m(9층 이하)

- 7구역 : 구리시 도시계획조례 의함. 단, 건축물 최고높이 54m(18층) 초과 시 건축물 신축은 별도 심의.

○ 사업내용

구분	1차('12.4.18)	2차('12.6.13)	3차('13.5.15)	금회('13.12.11)	비고 (3차↔금회 대비)
신청면적	20,081㎡	좌동	20,183㎡	좌동	
건축면적	2,576.72㎡	2,512.37㎡	4,277.99㎡	3,067.39㎡	1,210.6㎡, 감
연면적	57,852㎡	49,757.59㎡	44,120.90㎡	44,837.27㎡	716.37㎡, 증
규모	6동 지하1층, 지상18~25층	5동 지하1층, 지상16~23층	9동 지하1층, 지상 9~18층	7동 지하1층, 지상 8~18층	동수 2동, 감 최저층 1층, 감
건물높이	75.7m	67.8m	54.8m	54.75m	0.05m, 감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06./문화재위원 ○○○)

- 본 건물은 구리 동구릉의 현상변경허용 5구역과 7구역에 위치함
- 5구역에 최고 15층(45m) 건물과, 7구역에 최고 18층(54.75m) 건물 등 총 7동이 건립되어 해릉과 송릉의 경관을 저해함
- 경관 저해를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됨

(2) 현지조사의견('13.03.28./문화재위원 ○○○·○○○)

- 해릉, 송릉지역에서 본 대상 APT는 기존 한진아파트가 25층으로 건립되어 있으나 나란히 새롭게 높은 APT건립은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물이 되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봄
- 참고사항으로 금회 검토되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름이 좋겠음

(3) 공동주택 신축 현상변경허가 신청 이력

- '12.04.18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1차 부결
- '12.06.1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2차 부결
- '13.03.13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13.04.10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보류
- '13.05.15 문화재위원회 심의결과 3차 부결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로부터의 조망권을 저해하는 등 경관 훼손이 우려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2명, 기권 1명

11. 김포 장릉 주변 김포시청 청사 의회동 증축

가. 제안사항

경기도 김포시 소재 사적 제202호 「김포 장릉」 주변에서 김포시청 청사 의회동 건물을 증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김포 장릉 문화재구역 경계로부터 120m 이격된 위치에 김포시청 청사 의회동 건물을 증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김포 장릉(사적 제202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장릉로 79(풍무동 산141-1)
- (3) 신청내용 <김포시청 청사 의회동 건물 증축(별관신축)>
 - 위치 : 경기도 김포시 사우동 238-29외 4필지(1구역, 4구역)
 - 사업내용

부지면적	건물면적	연면적	건물규모 및 용도	건물 높이
28,907㎡	6,914.38㎡ (지상 4층)	32,728.27㎡	-동수 1동(지하 2층, 지상 4층) -지하 2층(주차장, 기계실) -지상 4층(사무실, 의원실, 본회의장, 방청실, 방송실)	21.5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2.03/문화재전문위원 ○ ○ ○)
 - 신청지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장릉(사적 제202호)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20m 이격되어 있음
 - 대상지는 김포시 청사 내 직장 어린이집 우측에 주차장 및 임야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변으로 약수터, 체력 단련장, 등산로가 있음

- 신축될 건물은 지하 2층, 지상 4층 1동으로 임야를 절토하여 신축 할 계획임
- 건물 뒤편에 화계 조성과 건물 옥상까지 연결되는 진입로가 계획되어 있음
- 김포장릉에서는 조망되지 않으나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이 필요함
- 경관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갈나무, 팔배나무 등은 보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장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12. 경희궁지 주변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주변에서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11.3월부터 6차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8.10. 현상변경 허가됨
- 지하층의 굴착 사항 등이 일부 변경됨에 따라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희궁지(사적 제271호) 등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2-1 등
- (3) 신청내용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서울 종로구 사직동 311-10번지 등(지정구역에 연접)
 - 사업내용

구 분	최초허가 (‘11.8)	변경허가 (‘12.8)	변경허가 (‘13.6)	금회신청	비 고
대지면적	27,391.20㎡	좌동	27,329.24㎡	좌동	
건축면적	7,794.36㎡	8,493.66㎡	8,654.02㎡	8,555.76㎡	감 98.26㎡
연 면 적	68,333.26㎡	75,886.56㎡	73,955.82㎡	73,446.00㎡	감 509.82㎡
건축규모	지하 2층 지상 4~12층	지하 3층 지상 4~12층	지하 2층 지상 4~12층	좌동	
건물높이	42.6m	좌동	42m	좌동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3.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 도시가스 배관 부설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도시가스 배관을 부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한양도성 보호구역 내에 도시가스 관로를 매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성북구, 중구, 종로구, 용산구 등 일원
- (3) 신청내용 <도시가스 배관 부설>
 - 위치 : 서울 성북구 삼산동1가 산1-11(문화재보호구역)
 - 사업내용
 - 도시가스 배관 부설 : 굴착연장 약 43m, 굴착깊이 약 1m, 굴착폭 약 0.8m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2.6/ 문화재위원 ○○○, ○○○)
 - 신청지역은 한양도성이 지나는 낙산공원 지역이며 서울시에서 성곽마을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으로 한양도성 주변 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을 부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신청지의 북측과 남측은 이미 가스관(160mm/100mm)이 매설되어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사항이고 매설지점은 성벽에서 약 10m 이상 이격된 곳으로 기존에 콘크리트포장 탐방로가 조성되어 있어 배관 부설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4. 경주 김유신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1호 「경주 김유신묘」 주변 단독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김유신묘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김유신묘(사적 제21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산7-10번지 등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충효동 284-1번지
(2구역 / 문화재구역에서 약 35m 이격)
 - 사업내용
 - 건축면적/연면적 99.28㎡, 지상 1층, 1동
 -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점토기와, 최고높이 5.6m, 굴착깊이 0.15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5. 부여 청마산성 내 입목벌채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 사적 제34호 「부여 청마산성」 내에서 입목벌채를 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등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부여 청마산성 문화재구역 내에서 경제수 수종갱신을 위한 입목벌채를 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 : 부여 청마산성(사적 제34호)
 - 소재지 : 충남 부여군 부여읍 능산리 산1-1 등
- (3) 신청내용 <입목벌채>
 - 위치 : 충남 부여군 부여읍 용정리 산36-1(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4.1ha
 - 사업방법 : 모두베기 후 소나무 조림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장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16.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참나무 벌채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산4 외
- (3) 신청내용 <참나무 벌채>
 - 위치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용운리 산94-11
(문화재구역으로부터 50m 이격)
 - 내용

지번	임반	소반	면적	산림현황		벌채 (2013)	운재로 (2013)	숲가꾸기 (2018)
				수종	총축적			
산 94-11	1-0	1-0	10.7ha	굴참, 상수리, 리기다, 기타활엽수	1,143.8m ³	굴참나무 615m ³ 중 276.8m ³ 간벌(45%)	0.28km	천연림개량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6/문화재위원 ○○○)

- 표고버섯 생산을 위하여 1구역(보존구역)에 위치한 임야의 굴참나무를 45% 간벌(전체 산림의 24%)하려는 사업임
 - 작업로 개설 : 280m, 땅고르기, 횡단배수로 설치, 성토사면 씨뿌리기
- 벌채계획구역은 굴참, 상수리, 리기다소나무, 기타 활엽수가 생육하는 혼효림으로 성목의 하층부에 7~8년생의 편백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나 성목의 울폐에 의해 성장이 저해되고 있어 굴참나무 간벌을 통해 생육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본 사업으로 인해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7.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도로 개설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성주군 소재 사적 제86호 「성주 성산동 고분군」 주변 도로 개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성주 성산동 고분군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개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성주 성산동 고분군(사적 제86호)
 - 소재지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산61번지
- (3) 신청내용 <도로 개설>
 - 위치 :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 일원(1, 2, 3, 5구역/문화재구역 연결)
 - 사업내용
 - 사업면적 16,454㎡
 - 도로확포장 L=954m, B=7.5~11m (L=694m, B=11m, L=260m, B=7.5m)

	구분	수량	비고
토공	흙깎기 / 흙쌓기	10,510m ³ / 10,983m ³	
배수공	L형 측구 / 옹벽형 L형 측구	1,935m / 386m	
	U형 개거 / 산마루 측구	154m / 169m	
	면벽 / 플룸관	3개소 / 512m	
	배수관 날개벽	6개소	
	집수정 / 우수받이	3개소 / 13개소	
	도수로 / BOX	6m / 204m	
	배수관	196.5m	
구조물공	L형 옹벽	47m	
포장공	아스팔트 포장 / 인도 포장	10,014m ² / 4,073.3m ²	
	보차도 경계석 / 도로 경계석	1,441m / 1,389m	
부대공		1식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1.4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성주 성산동 고분군의 북측 전시관 예정부지와 연접한 1구역 (원지형 보존구역)에서 시작하여 성산동 고분군 사이를 가로지르며 문예회관과 연계하기 위하여 폭 14.5m, 길이 950m 구간을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도로를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업 자체가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도로 개설구간에 문화재 지정구역이 포함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절·성토를 최소화하는 등 일부 계획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지정구역을 벗어나도록 하여 개설할 것
 - 도로 폭은 8m 이내로 하고 경관에 적합한 도로 포장(아스팔트 제외)으로 설계한 뒤, 문화재청의 검토를 받아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18.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부잔교 시설물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통영시 소재 사적 제113호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요트계류장 부잔교 시설물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 주변 요트계류장 부잔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통영 한산도 이충무공 유적(사적 제113호)
 - 소재지 :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한산일주로 70번지(두억리) 일원
- (3) 신청내용 <부잔교 시설물 설치>
 - 위치 : 경남 통영시 한산면 두억리 732-1번지 일원(문화재이격거리 150m/1구역)
 - 사업내용
 - 공유수면 점용면적 : 2,567㎡
 - 잔교 : 1.0m*12.0m=12.00㎡
 - 부교(1) : 5.0m*20.0m=100.00㎡
 - 부교(2) : 5.0m*10.0m=50.00㎡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19. 진주성 내 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경상남도 진주시 소재 사적 제118호 「진주성」 내 안내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성 내 안내판을 설치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성(사적 제118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본성동 일원
- (3) 신청내용 <안내판 설치>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남성동, 본성동 일원(지정구역 내)
 - 사업내용
 - 안내판 1개(규격 65*160cm)

라. 현지조사 의견(2013.12.05/문화재전문위원 ○ ○ ○, ○ ○ ○)

- 본 건은 진주성 내 현 운주헌 터 안내판 옆에 근세기에 운주헌 터에 존재했던 경남도청 터의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발굴에 의해 그 터가 확인된 것이 아니며, 운주헌 터 안내판의 안내문에 경남도청 터의 설명이 있고 또한 진주성의 역사를 볼 때 진주성 내에 근세의 역사를 기념하기 위하여 경남도청 터의 안내판이 신설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사항(설치예정 안내판 문안)

○ 경남도청(선화당) 터

이곳은 경상남도 관찰사가 정무를 보던 선화당을 중심으로 경남도청이 있었던 곳이다. 선화당은 조선시대 관찰사의 집무실로 임금의 덕을 선양하고 백성을 교화하는 의미를 지닌 건물이다. 진주는 일찍이 경상우도의 중심지로 1895년 전국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로 지방제도를 개편할 때 관찰부가 되었다. 1896년 8월 4일 경상도가 남 북 2개도로 나뉠 때 칙령 36호로 경상남도 도청 소재지가 되었다. 경남 도청은 1896년 8월 1일부터 1925년 3월 31일까지 29년간 진주에 소재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제에 의해 국권이 상실되었다. 1910년 국권이 상실되면서 선화당과 관찰사의 명칭은 없어지고 일본인 도장관이 그 역할을 대신하다가 1925년 4월 1일 일제에 의해 강제적으로 도청을 부산으로 옮겨갔다.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20. 창덕궁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122호 「창덕궁」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창덕궁 외곽담장으로부터 약 23m 이격된 곳에 기존 노후 건물을 철거하고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2) 대상문화재명 : 창덕궁(사적 제122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와룡동 2-71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륜3가 55-2호(3구역)

- 3구역 : 평지붕, 건물최고 높이 8m이하 / 경사지붕, 건물최고 높이 11m 이하
- 공통사항 : 창덕궁 동북측지역(문묘인접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창덕궁 지정·보호구역에 설치된 담장 높이보다 낮게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

- 사업내용

구분	기존 건물	신청내용	비고
대지면적	171.19m ²	좌동	
건축면적	103.02m ²	102.68m ²	
연면적	103.025m ²	251.54m ²	
규모	지상 1층	지상 3층	
구조	조적조	철근콘크리트, 경사지붕	
높이	3.0m	10.3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3.12.09/ 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역은 창덕궁 외곽 담장으로부터 약23m 이격된 곳에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3층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신축건물 주변에는 2층과 3층의 다세대 주택과 1층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음
- 신축건물은 경사지붕으로 최고높이(10.3m)가 창덕궁 현상변경허용기준(3구역)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또 다른 허용기준인 창덕궁 외곽담장(8.4m~9.0m) 보다 건축물 높이가 1.3m~1.9m 높아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창덕궁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2명, 보류1명

21. 강화 삼랑성 등 보호구역 내 문화관광해설사 대기소 설치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0호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조립식 대기소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삼랑성 보호구역 내 전등사 경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조립식 대기소를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문화재위원회 제13차 회의('13.11.13)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삼랑성(사적 제130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강화 전등사 대웅전(보물 제178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강화 전등사 약사전(보물 179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 강화 전등사 칠종(보물 393호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

(3) 신청내용 <문화관광해설사 조립식 대기소 설치>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온수리 635번지(보호구역 내)
- 사업내용
 - 설치면적 : 12m²(3m*4m)
 - 수 량 : 1동
 - 높 이 : 2.6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1.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강화 삼랑성 남문(宗海樓) 북측에는 전등사 대웅전, 약사전 등 많은 문화재가 있으므로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대기소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나, 대웅전(보물 제178호) 남측 대조루 진입부에 근접하여 있는 운장대 북측에 조립식 대기소를 설치하는 것은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
- 전등사 경역 내에 문화관광해설사의 업무·대기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조립식 건물보다 주변의 경관과 조화되는 전통건물을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위치(현 창고건물 등)에 건립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 경관 저해 및 장소 부적합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0명, 조건부가결 1명, 보류 2명

22.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산성 주변에 기존 노후 주택(1층)을 철거 후 단독주택(2층)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신청지는 현상변경 허용기준 상 기존 시설물 범위 내에서 재·개축이 가능한 곳으로 현재 1층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 중에 있으나, 건축규모를 변경(1층→2층) 하고자 시공을 중단한 후 현상변경 허가를 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산성(사적 제132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국화리 산3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977-3번지
(2구역/문화재로부터 40m 이격)
 - 허용기준 : 평지붕-최고높이 5m이하(1층), 경사지붕-최고높이 7.5m이하(1층)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308㎡
 - 건축면적 : 61.56㎡
 - 연 면 적 : 99.36㎡
 - 규 모 : 1동,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황토벽돌마감, 아스팔트싱글지붕)
 - 최고높이 : 7.3m

라.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23.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133호 「강화 고려궁지」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도로교통환경 개선, 교통정체 해소, 소방도로 확보를 위하여 강화 고려궁지 주변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지난 문화재위원회에서 '발굴조사 후 재검토'로 2차례 보류되었으며, 제13차 회의('13.11.13) 시 '현지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 1차('12.05.09) :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재검토
 - 2차('13.05.29) : 전체적인 발굴조사 후 재검토
 - 3차('13.11.13) : 현지조사 후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고려궁지(사적 제133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743-1
- (3) 신청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원(성광교회~용흥궁 공원)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200m 이격/ 4구역)
 - 사업내용
 - 도로 개설 L=0.4m B=12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04/문화재위원 ○○○, ○○○, ○○○)

- 상기 위치에서 확인된 유구는 지역의 역사성과 유구의 양상·규모를 고려할 때 고려 궁궐터의 한 부분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
- 도시계획도로는 유구를 노출·전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의 다리를 건설하여 통과하도록 하고 도로계획도로 2구간에서 확인된 정연한 건물지 유구도 노출·전시하여 효율적 유적활용도 가능하게 하고 차후 주변지역에서 새로운 발굴을 통하여 유구가 확인될 때 상호연결성도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2.05.04/문화재위원 ○○○, ○○○)

- 현행 도로를 확장·정비하고자 하는 신청사업은 문화재 역사문화경관을 훼손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사업대상지가 강화 고려궁지와 200m 가량 이격되어 있으나, 현재의 고려 궁지는 그 지정범위가 궁지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변 지역에 대한 면밀한 조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함
- 아울러, 사업신청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발굴조사를 통해 유적·유물의 성격 규명으로 고려궁지와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의 중요도에 따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전면수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3) 발굴조사 추진경과

- 발굴(시굴)허가(2009.06.08. / 문화재청)
 - 조사기관 :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
 - 발굴기간 : 2009.6.8.~2010.10.18.(실조사일수 : 31일)
 - 발굴면적 : 13,975㎡
 - 조사결과 :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 6개소 및 선조문기와, 청자잔, 어골문기와, 원우통보 등 다수
- 1차 지도위원회(2010.03.31 / ○○○, ○○○)
 - 시굴시 유구가 확인된 3번 트렌치를 중심으로 도로개설 구간의 최대 폭까지 확대 조사하여 유구의 분포범위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함
- 2차 지도위원회(2010.06.23. / ○○○, ○○○)
 - 유구가 확인된 지역(시굴트렌치 1)을 중심으로 확대 조사하여 성격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시굴지역 중 유구가 없는 지역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3차 지도위원회(2010.07.23. / ○○○, ○○○, ○○○, ○○○)
 - I 지점의 고려시기 유구는 고려 궁궐지와 관련성이 있으므로 성격규명을 위하여 확대조사가 필요
 - I 지점의 중첩된 유구는 강화지역의 고려궁궐지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조사단은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유구가 보존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 II 지점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고 주변지역(사업이외의 지역)은 사업시행 시 향후 조사가 반드시 실시되도록 관계당국에 통보할 것
- 2010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0.10.26.)
 - I 지점에 대한 추가조사 후 재검토
- 발굴변경허가(정밀발굴) 및 부분공사 신청(2011.02.28. / 강화군)
 - 신청사유 : 확인유구의 정밀발굴(조사기관 변경) 및 부분공사 시행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재)서경문화재연구원]
- 2011년 제3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1.03.25.)
 - 기관변경관련 : 유구의 중요성과 발굴조사의 연속성을 고려, 시굴조사기관이 정밀발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함
 - 부분공사관련 : 1지점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후 검토
- 발굴변경허가(정밀발굴)신청(2011.06.15. / 강화군)
 - 신청사유 : 입찰에 따른 조사기관 변경
 [(재)겨레문화유산연구원→(재)한국문화유산연구원]
- 2011년 제6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1.06.26.)
 - 발굴과정에 문화재청이 지정한 전문가의 검토를 반드시 시행하고, 발굴결과에 대해서는 사적분과 문화재위원회와 합동으로 검토하도록 함
- 발굴변경허가(정밀발굴)허가(2011.06.29. / 문화재청)
- 전문가 현지검토회의(2011.10.12. / ○○○, ○○○)
 - 고려시대 궁성 유적과 관련될 가능성이 있음
 - 개별유구를 해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완조사를 진행하고 이전 조사기관과 관련 전문가가 참가하는 학술자문회의를 개최한 다음 그 결과를 문화재청과 협의 하여 처리
 - 조사 완료 후 유적의 학술적 가치, 희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존 여부 결정 필요
- 학술자문회의(2011.10.20. / ○○○, ○○○, ○○○)
 - 4호 건물지와 후대 담장지는 3D스캔을 실시하고, 기록보존 후 해체조사를 실시
 - 1호 건물지와 7호 건물지 담장지에 탐색피트를 추가 설치하여 조사 실시

- 문화재위원 현지검토(2011.11.16. / ○○○, ○○○, ○○○)
 - 고려 궁지와 관련된 고려시대 공공건물지로 보존가치가 높음
 - 건물지의 남쪽과 북쪽으로 연결되는 유구 양상을 추가적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건물지의 규모와 성격을 명확히 밝혀야 함
 - 공공 건물지 유구 이외의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는 지역민의 민원해소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 2011년 제11차 문화재위원회 매장문화재분과 심의(2011.11.25.)
 - 1차 조사지역은 추가 발굴조사 후 결과를 재검토하고 2차 조사지역은 발굴조사 결과 보존가치가 있는 유구가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공사시행 여부는 관계부서와 협의토록 함
- 발굴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지(2011.12.22. / 문화재청)
 - 1차 조사지역은 별도의 발굴허가를 득하여 추가 조사 실시, 2차 조사지역은 관련법에 따라 현상변경 허가를 득한 후 전문가 입회하에 공사 진행
- 3차 발굴허가(정밀발굴)(2012.05.30. / 문화재청)
 - 추가 확대 정밀발굴 : 360㎡
- 전문가 현지검토회의(2012.08.10. / ○○○, ○○○, ○○○)
 - 1호와 5호 건물지는 성격상 측면1칸의 국가적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으며, 5호 건물지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유구의 구분을 위한 추가 조사(기록을 철저히 할 것)
 - 현재 상황에서, 남~북상으로 조사한 지점에서 확인된 유구는 북쪽으로 계속 진행되는 만큼, 확보된 구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여 유구의 지속성을 확인 후 전체 유구의 처리 방향을 결정
 - 정밀 발굴조사범위(320㎡)와 추가 발굴조사범위(360㎡)를 제외한 과거 조사지역은 활용해도 무방함
 - 조사 방향과 보존방향이 확정될 때까지 유적의 안전은 물론 주민안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할 것
- 유구보존 및 도로공사 추진계획(안) 제출(2013.04.29. / 강화군)
 - 유구 보존을 위하여 3개의 안을 제출
- 전문가 현지검토회의(2013.05.16. / ○○○, ○○○, ○○○)
 - 사업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고려시기의 유구(건물지)가 확인되었고, 청자 등의 유물이 출토됨
 - 유구의 중요성이 있으므로 보존방안과 안전 관련(유적)방안 확립 필요
 - 사업지역에 대한 자료(보고서 발간 등) 확보 후 유구 보존방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여 관련 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함

- 매장문화재분과 유적 보존방안 심의결과(2013.5.31)
 - 조건부가결 : 복토 후 공사를 시행토록 하되, 유적보존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은 문화재청이 검토하여 조치할 것
- 도시계획도로 2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강화군)
 - 조사기간 : 2013.9.30~10.10
 - 조사구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837-2번지 일원
강화 성광교회~동문간 도시계획도로(2구간) 내
 - 조사기관 : 한국문화유산연구원(단장 ○○○)
 - 조사결과 : 시굴조사 결과 유구나 유물은 확인되지 않음
- 2구간 내 문화유적 시굴조사 완료에 따른 보존대책 통보(발굴제도과/2013.10.30)
 - 시굴조사가 완료되었기에 별도의 보존대책은 불필요함
 - 건설공사 시행 중 매장문화재가 추가로 발견 될 시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준수
 - 조사내용에 대한 기록·보존 철저히 할 것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유구를 노출, 전시할 수 있도록 적절한 높이의 다리를 건설하여 도로가 통과 되도록 할 것
 - 2구간 발굴 결과로 확인된 유구 역시 노출, 전시하여 효율적인 유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24.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 주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소위원회(12차/13.11.28)에서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로 부결되어, 설계변경 후 재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 (3) 신청내용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신축>
 - 위치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253-1번지
(2구역/문화재 이격거리 35m)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내용 (13.11.28/부결)	2차(금회) 신청내용	비고
대지면적	841.20㎡	좌동	
건축면적	493.24㎡	482.68㎡	
연 면 적	986.48㎡	965.36㎡	
규 모	지상2층, 높이 8.2m (빗지붕/일부경사)	지상 2층, 높이 8.7m (10:3 이상 경사지붕)	10:3 이상 경사지붕으로 변경하면서 높이 상승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9/ 문화재위원 ○○○)

- 상기 근린생활시설 신축지는 2구역에 위치하고 문화재 이격거리가 35m여서 양각으로 1:5 비율이므로 현상변경기준 높이가 7m까지이나, 인근에 기 개발된 건물들이 그보다 높은 건물이 다수 있고 양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적으며, 문화재 경관관리에도 큰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상2층에 높이 8.5m의 경사지붕의 건축물 허가는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다만, 신규 건축물의 길이가 30m여서 건축의 볼륨감이 매우 큰 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2) 현지조사의견('13.11.18/ 문화재전문위원 ○○○)

- 최초 신청 건물은 울주 언양읍성에서 동측으로 35m 이격된 2구역(언양읍 사무소 및 63부페 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기준하여 양각(1:5 비율 적용)에 건축면적 489.88㎡, 연면적 979.76㎡, 높이 10.3m의 평지붕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 주변의 건축현황과 남측의 추가지정에 따른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높이 8.5m에 경사지붕 정도로 구성하고 입면 길이 30m로 상당한 길이가 있으므로 분절을 통한 입면의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25. 진주 평거동 고분군 주변 가로등 설치

가. 제안사항

경남 진주시 소재 사적 제164호 「진주 평거동 고분군」 주변 가로등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진주성 평거동 고분군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려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진주 평거동 고분군(사적 제164호)
 - 소재지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산44-2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가로등 설치>
 - 위치 : 경상남도 진주시 평거동 산5번지 임(문화재구역 연결)
 - 사업내용
 - 보안등 9개(높이 4.5m), 전선지지 철탑 12개(철탑 높이 6.4m, 외경 89mm)

라. 현지조사 의견(2013.12.05/문화재전문위원 ○ ○ ○, ○ ○ ○)

- 본 건물은 진주 평거동 고분군에서 10m~20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 구역)에 높이:4.5m의 보안등 9본과 높이:6.4m의 전선지지 철탑 12본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지 않아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나 산간의 등산로에 보안등의 설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결과에 따라 처리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26. 안동 도산서원 내 오솔길 신설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안동시 소재 사적 제170호 「안동 도산서원」 내 오솔길 신설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안동 도산서원 내 퇴계오솔길을 신설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안동 도산서원(사적 제170호)
 - 소재지 : 경북 안동시 도산면 도산서원길 154 (토계리)
- (3) 신청내용 <오솔길 신설>
 - 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 산61-1, 산62, 산63(문화재구역)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920m²
 - 노반준비 및 벌개제근 (B=1.0m, L=920m)
 - 돌계단 설치(B=1.0m, L=30m), 출입문 설치(H=2.0m, W=1.0m, 1개소)

라. 의결사항

- 보류
 - 현장조사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27. 구리 동구릉 주변 어린이공원 조성

가. 제안사항

경기도 구리시 소재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주변 아름마을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구리 동구릉 문화재구역 경계에서 230m 이격된 곳에 아름마을 내 어린이 공원을 조성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구리 동구릉(사적 제193호)
 - 소재지 : 경기 구리시 동구릉로 197(인창동)
- (3) 신청내용 <아름마을 어린이공원 조성>
 - 위치 : 경기 구리시 인창동 651-2 일원(6구역)
 - 사업내용

구분	면적(m ²)	사업내용	비 고
총 사업면적	5,407		사업비 :4,085백만원
기반시설	1,414	산책로, 진입광장, 화강석 포장	
휴양시설	180.8	쉼터, 플랜트, 앉음벽, 등 의자, 데크포장	
유희시설	443.9	어린이놀이공간, 물놀이조합시설 등	
운동시설	75.6	운동공간, 체력단력시설A~F, 화강석 포장	
편익시설	34	이동형 화장실, 계단, 화강석 포장	화장실 높이 3.0m
잔디마당	1,929	다양한 연령층이 어울리는 공간	잔디식재 2,853.6m ²
녹 지	1,329.7	왕벚나무 등 교목 121주 식재 회양목 등 관목류 4,039주 식재 웬스 43경간(H:1m) 설치, 자연석쌓기 45.84m	현존 수목 이식 활용하여 기존경관 유지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06./문화재위원 ○○○)

- 대상지는 구리 동구릉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약 170m 이격되어 있음
- 동구릉 남측 북부간선도로 하부에 위치하며 경작지 등으로 이용되고 있음
- 구리 동구릉에서는 조망되지 않음
- 동구릉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식재 수종은 전통수종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식재 수종은 전통수종으로 변경하여 사업 실시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28.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가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가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버섯재배시설(가단지)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번지

(3) 신청내용 <버섯재배시설(가단지)>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202, 산202-4, 1111-2
(1구역 / 문화재구역에서 450m 이격)

○ 사업내용

- 토 공 : 흙깎기 $V=6,557\text{m}^3$, 흙쌓기 $V=6,536\text{m}^3$
- 배수공 : 산마루측구 $L=750\text{m}$, U형플룸관 $L=69\text{m}$, 흡관 $L=6.25\text{m}$, 이중벽관 $L=145\text{m}$, 집수정 13개소
- 구조물공 : 석축($H=2\text{m}$) $L=69\text{m}$
- 부속건물 : 선별장 및 출하장 3동
 - 건축면적 576m^2 ($192\text{m}^2 \times 3\text{동}$),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4.57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7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에서 45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에 절토 6557㎡, 성토 6536㎡, 높이 2m×69m 규모의 석축을 쌓아 지형을 조성하고 이곳에 버섯 재배사 3개동(24m×8m, 24m×8m, 24m×8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며, 지형의 훼손이 과도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29.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나단지) 조성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241호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 버섯재배시설(나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 주변에 버섯재배시설(나단지)을 조성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사적 제241호)

- 소재지 : 경북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942-1번지

(3) 신청내용 <버섯재배시설(나단지)>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202, 산202-4, 1111-2
(1구역 / 문화재구역에서 470m 이격)

○ 사업내용

- 토 공 : 흙깎기 $V=6,557\text{m}^3$, 흙쌓기 $V=6,536\text{m}^3$
- 배수공 : 산마루측구 $L=750\text{m}$, U형플룸관 $L=69\text{m}$, 흠관 $L=6.25\text{m}$, 이중벽관 $L=145\text{m}$, 집수정 13개소
- 구조물공 : 석축($H=2\text{m}$) $L=69\text{m}$
- 부속건물 : 선별장 및 출하장 3동
 - 건축면적 $576\text{m}^2(192\text{m}^2 \times 3\text{동})$, 지상 1층, 경량철골조, 경사지붕, 최고높이 4.57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7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화산리 회유토기 요지에서 470여m 이격된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에 절토 6557㎡, 성토 6536㎡, 높이 2m×69m 규모의 석축을 쌓아 지형을 조성하고 이곳에 버섯 재배사 3개동(24m×8m, 24m×8m, 24m×8m)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며, 지형의 훼손이 과도하여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30. 전주 남고산성 주변 정자 설치

가. 제안사항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사적 제294호 「전주 남고산성」 주변 정자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전주 남고산성 주변 정자 설치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3년도 사적분과 제12차(2013.10.16.) 심의 시 부결되어 계획을 수정하여 재신청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전주 남고산성(사적 제294호)
 - 소재지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228 외
- (3) 신청내용 <정자 설치>
 - 위치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동서학동 산142(문화재구역으로부터 30m 이격)
 - 내용

구분	규모	양식	수량	위치
당초	H5,789 × B4,000	파고라	1개소	억경대 연접
변경	H4,000 × B5,500	정자	1개소	억경대로부터 50m 이격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3.12.5./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위치는 남고산성 억경대로 올라가는 능선으로 성벽에서 약 50m 이격되었고 성벽과 신청부지 사이에는 수목이 식재되어 있는 상황임
 - 신청건물은 전통한식으로 조성하는 탐방객 휴식시설이고, 신청부지는 성벽보다 낮은 위치이며, 수목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므로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31.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주변 동상 설치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주변 동상 설치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주변에 동상을 설치하려는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소위원회 제12차 회의('13.11.28.)에서 '현장조사 후 재검토'로 보류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사적 제299호)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4번지 일원
- (3) 신청내용 <동상 설치>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22-1번지
(문화재구역으로부터 40m이격 / 1구역)
 - 사업내용
 - 설치면적 28.27㎡, 최고높이 2.0m
 - 석호필(스코필드) 박사 동상제작 설치

라. 현지조사의견(2013.12.11/문화재위원 ○○○, ○○○, ○○○)

-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사적 제299호) 내에 스코필드 박사를 기념하는 시설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건물 내 소공간을 마련하여 흉상 정도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함
- 스코필드 박사의 조형물 설치 건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암리 순국유적지 활용방안 용역에 포함하여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겠음

마. 참고사항

(1) 경기도지사의견

- 독립운동을 지원한 “민족대표 34번째”로 불리는 유일한 외국인
-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은 3.1운동 발상지이며 연간 10만명 이상이 방문하는 곳으로 스코필드와 관련된 캐나다 등 미주 관광객 기대, 독립운동의 성지 부각 예상
- 또한, 관광 인프라 등 긍정적 요인도 작용, 수원·화성을 포함한 “지역역사탐방 문화콘텐츠”로 개발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2) 화성시장의견

- 스코필드 박사는 영국생 캐나다인으로 세계적 학자이기도 한 박애주의자임. 그러므로 스코필드 박사 기념사업은 민족정신을 바로세우는 동시에 세계시민 정신을 교육하는 사업임
- 제암리는 3.1독립운동 및 민족운동의 발상지로서 경기도와 화성시의 국내 및 국제적 이미지 제고 및 홍보효과가 있음
- 수원 및 화성을 포함한 경기도 지역 역사탐방 문화콘텐츠를 다양화하고 수도권 지역 및 전국 초·중·고·대학생과 일반인의 역사·문화 탐방객 및 견학생 유치로 경기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음

(3)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일반설명

3·1운동때 일제가 독립운동을 가장 잔인한 방법으로 탄압한 학살현장이다.

3월 10일경에 안중린·안정옥 등이 서울에서 독립선언문과 격문을 입수하고, 3월 25일에 뒷산에 올라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봉화를 올리고 만세를 외쳤다. 그후 4월 5일에 발안 장날에 주민들에게 나누어주고, 교회 청년들과 시장에 모인 주민들이 만세를 부르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에 일본 경찰이 무차별 사격과 매질을 가해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였다. 격분한 군중들은 돌을 던져 경찰부장을 죽였다. 4월 15일 일본군은 제암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15세 이상의 남자는 모두 교회당으로 모이게 한 후, 출입문과 창문을 밖에서 잠그고 일제히 집중사격을 했다. 또 교회당 밖으로 시체를 끌어다 모아 다시 그 위에 짚을 쌓아 불을 질렀다. 이때 무참히 살해된 주민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23명이었다. 일본군은 다시 마을을 다니며 민가에 불을 지르고, 이웃마을 고주리에서는 주민들을 마구 칼로 찔러 죽였다.

이 사건은 죄없는 주민들을 학살한 사건으로 일본이 저지른 잔악행위의 상징적인 사건이다. 1982년 제암리마을의 유일한 생존자인 전동례의 증언으로 이 지역을 발굴 조사하였다. 그 결과 23위의 유해와 희생자들의 조끼단추, 동전, 못, 병들이 함께 출토되어 이곳에 표석을 세우고 합동장례식을 거행하였다.

불탄 예배당터에는 순국기념탑을 세우고, 국·내외 관계자료를 모아 기념관에 전시해 국민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4) 석호필박사 동상건립 추진 개요

가) 사업개요

- 사업명 : 석호필 박사 동상건립 사업
- 위 치 : 화성시 향남읍 제암리 392-2(제암리 3.1운동 순국기념관 공원 내)
- 사업기간 : 2013.09.~2014.03.
- 총사업비 : 350백만원(분권교부세 175백만원, 시비 175백만원)

나) 석호필 박사의 생애 및 업적

- 캐나다인 Frank. W. Schofield(한국식 이름: 석호필) 박사는 1916년 세브란스 의전 세균학 교수로 한국에 오
- ‘석호필(石虎弼)’의 석(石)은 그의 철석같이 굳은 의지를, 호(虎)는 호랑이, 필(弼)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호랑이 같은 의지로 한국인을 돕겠다는 마음을 표현한 것임
- 1919년 3월 1일 역사적 독립만세의 현장을 사진으로 남겼으며(유일본), 3·1 운동 이후에 일본의 조선인 학살과 고문을 국제 사회에 고발하고 공개적으로 조선의 독립을 지지하여 일제가 무단통치를 완화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 그 후 캐나다로 돌아가 학업에 매진하여 1952년에는 독일 뮌헨(Munchen)의 루드비히·막시밀리안·대학교(Ludwig Maximilian University)에서 명예수의학 박사의 학위를 받았고, 같은 해에 미국 가축 질병 연구회 회장으로 추대되었음. 또한 1954년 8월에는 캐나다에 있는 프랑스계통 수의학협회로부터 세인트·에이르와 훈장(the medal of Saint Eloi)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에 미국 수의학회 연례회에서 12번째로 <국제수의학회상>(Interational Veterinary Congress Prize)을 받는 영예를 차지한 바 있음
- * 오늘날 수의학, 수의세균학 관계 문헌에서 스코필드 박사의 이름을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 있고, 또한 근세 수의학 발달사(近世獸醫學發達史)를 기록하는 서적들이 그의 업적을 대서특필하고 있음
- 1959년 대한민국으로 영구 귀국하여 보육원 후원 및 흥국 직업학교를 돕는 등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소외된 자와 학생들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에 헌신하였음
- 1970년 4월 12일 영면하였으며, 3.1운동의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4번째 민족 대표로서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안장된 유일한 외국인이자, 대한민국 문화훈장·건국공로훈장 수상자로서 온 국민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역사적 인물임



제암교회 앞뜰에서 일본순사와 사건내용을 주고 받는 모습을 숨겨온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암리에서 일본이 저지른 만행을 세계에 알렸음



1970년 4월 12일 스코필드 박사가 영면하자, 제암교회 앞에서 박사의 명복을 받고 있는 마을사람들

다) 그간 추진현황

- 2011. (사)호랑이스코필드기념사업회에서 동상건립 제안 및 화성시에서 수렴
- 2012. 3. 국가보훈처 및 경기도에 사업계획 보고 및 계획서 제출
- 2012.11. 분권교부세 안전행정부에 요구(수원보훈지청)
- 2013. 1. 분권교부세 교부결정(175백만원, 1회 추경에 화성시 예산으로 성립)
- 2013. 9. 화성시 2회 추경에 175백만원 성립

라) 사업 취지·배경

- 스코필드 박사는 1919년 4월 15일 경기도 수원군(지금의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에서 일본군의 참혹한 만행인 제암리 주민 학살사건이 일어나자 어릴 때 앓은 소아마비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카메라 한대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와 그 현장을 조사하여 사진을 찍고 기록하여 그 참상을 국내외에 알린 인물(<수원에서의 잔학 행위에 관한 보고서>를 국외에 최초로 언론공개)
- 캐나다 정부에서는 스코필드 박사를 캐나다의 역사적 인물로 선정했으며, 캐나다 교포들로 구성된 캐나다 스코필드박사추모재단(Dr. Schofield Memorial Foundation)에서는 이미 지난해 10월 스코필드 박사 동상 제막식을 개최한 데 이어 스코필드 박사 추모공원을 짓고 있음
- 위와 같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스코필드 박사에 대한 역사적 조명과 국민적 추모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화성시에서는 3·1운동의 발상지이며 연간 1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이 방문하는 제암리 순국유적을 스코필드 박사의 업적을 기리고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을 독립운동의 성지로 부각시키고자 석호필 박사 동상 건립을 추진하고자 함

* 제암리3,1운동순국기념관은 제암리 학살사건 뿐만 아니라 3.1운동 정신과 수원·화성지역 선열들의 독립만세운동 참여 상황을 널리 알림으로써 그들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건립되었음. 기념관은 두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전시관 ‘제암리관’에서는 ‘제암리 학살사건의 증언자들’로서 제암리 학살사건의 진상을 외국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음

* 참고자료

(사)스코필드 기념사업회

- 법인명 : 사단법인 스코필드기념사업회/ ‘10.7.13. 법인 출범
 - 회장 : ○○○(한국과학기술원 신소재공학과 교수)
 - 명예회장 : ○○○(서울대 前총장, 1대 회장)
- 주요사업 : 스코필드 박사 장학사업, 추모사업 등

바.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32. 순천 낙안읍성 내 민가 부속채 증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순천시 소재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내 민가 부속채 증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순천 낙안읍성 내 민가 부속채 증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순천 낙안읍성(사적 제302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서·남내리 일원
- (3) 신청내용 <민가 부속채 증축>
 - 위치 : 전라남도 순천시 낙안면 동내리 379(문화재구역)
 - 내용
 - 부속채 : 55.53㎡, 높이 4.5m
 - 창호 2개소 설치, 부엌 8.1㎡ 증축, 채양 2.1m 설치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3.12.2/문화재전문위원 ○ ○ ○)
 - 신청건물은 동문에서 약 60m 이격된 위치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이나 동문에서 서문으로 가는 주 도로와 성벽에서 기존 건물에 가려져 있고 지형도 낮아 보이지 않는 상황임
 - 사람이 거주하는 기존 가옥의 부속채에 생활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부엌과 채양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주 동선에서 보이지 않아 문화재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채양은 건물의 전면에 나타나게 되므로 폭을 축소하고 전통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심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33. 경주 남산 일원 내 요사채 개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내 요사채 개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주 남산 일원 내에서 요사채를 개축하기 위하여 현상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임
- 2013년 12차 위원회('13.10.16) 심의결과(조건부가결)에 따라 시굴조사 후 위치, 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사항임
 - 2012년 제7차 위원회('12.7.4) : 부결,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2013년 제6차 위원회('13.5.15) : 보류, 토지소유상태 등 제반여건 조사 후 재검토
 - 2013년 제9차 위원회('13.7.10) : 보류, 시·발굴 조사계획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2013년 제12차 위원회('13.10.16) : 조건부가결, 시굴조사 후 위치, 규모 등 재검토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 남산 일원(사적 제311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인왕동 일원
- (3) 신청내용 <요사채 개축>
 - 위치 : 경상북도 경주시 내남면 용장리 887번지 일원(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구분	1차 신청내용 (‘12.7.4/부결)	2차 신청내용 (‘13.10.16/조건부 가결)	금차 신청내용 (기존 요사채 2동 개축)	비고
대지면적	1,137㎡	좌동	좌동	
연면적	66.69㎡	69.39㎡	44.51㎡(가동)/124.3㎡(나동)	
규모	1동, 지상 1층	좌동	2동, 지상 1층	
구조	한식목조, 기와지붕	좌동	목조, 초가(가동)/와가(나동)	
최고높이	5.95m	좌동	4.5m(가동)/4.4m(나동)	
건축방식	기존건물 철거 후 신축	좌동	벽체, 창호, 지붕, 반자 100% 해체 보수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05.01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주 남산 내에 위치하는 천룡사의 요사채 건물이 노후되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건축면적 69.39㎡, 정면 4칸, 측면 1칸의 전통건축형 목조 요사채를 면적을 늘려 개축하고자 하는 건물로서 40여m 이격거리에 천룡사지 3층석탑(보물 1188호)이 있으며, 일부 구간 발굴조사와 잔존하는 석물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대규모의 사찰 잔존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발굴 조사를 통해 사역의 범위와 가람배치의 양상을 확인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요사채의 위치·규모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2) 시굴조사결과('13.11.4~11.19 / ○○○)

- 조사대상지는 경주 남산 천룡사지에 위치하며, 현재 임시 법당 및 요사채가 위치하고 있음. 천룡사지와 관련하여 1990년에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박물관, 1997년, 2006년에는 석탑 주변에 대한 학술조사와 배수로 정비를 위해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천룡사와 관련된 고려~조선시대의 건물지 등을 확인함
- 이번 발(시)굴조사에서는 천룡사 삼층석탑의 기단면과 직교되게 10m 간격으로 그리드를 설정하여 11개의 트렌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선시대의 초석 2기, 석렬 6기, 집석유구 5기, 시대미상의 가구식 기단석렬 1기와 조선시대 유구 아래서 통일신라시대로 추정되는 집석시설 1기가 확인되었음. 이번 발(시)굴조사에서 확인된 유구는 1997년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에서 발굴조사한 천룡사지 관련 건물지와 유사한 양상으로 확인되었음. 특히 대나무밭에 설정한 트렌치2에서 가구식 기단석렬이 확인되어 사역의 경계가 북쪽으로 더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었음
- 트렌치 조사의 한계점으로 인하여 정확한 구조와 규모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지만 이번 조사지역 전역에서 유구가 확인되어 정밀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그 성격을 규명하여야 할 것임. 기존의 요사채부지와 개축부지 주변에 설정한 트렌치7·11에서 조선시대 석렬 및 집석유구가 확인이 되었음 따라서 기존 요사채 부지에서 건축면적이 늘어나는 부분은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하여야 할 것임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34. 서산 보원사지 주변 단독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충청남도 서산시 소재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주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산 보원사지 주변에서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산 보원사지(사적 제316호)

- 소재지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05 등

(3) 신청내용 <단독주택 신축>

- 위치 : 충남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136-1번지(문화재구역에서 약 30m)

- 허용기준 1구역(신축불가, 기존 건물 개보수 허용, 기존건물 연면적 10% 증축 허용)

- 사업내용

- 대지면적 : 660.00m²

- 건축면적 : 101.28m²

- 연 면 적 : 99.84m²

- 건축규모 : 지상1층(높이 6.5m)

- 건축구조 : 조적조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35. 파주 소령원과 수길원 주변 태양광발전소 건설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제358호 「파주 소령원」 과 사적 제359호 「파주 수길원」 주변에서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소령원과 수길원의 문화재구역으로부터 약 100m 이격된 위치에 태양광발전소(통일 마장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 ※ 기존 축사 건물('07.5.18 심의 득) 지붕 위에 태양광전지판(모듈) 설치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소령원(사적 제358호)과 파주 수길원(사적 제359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 267번지
- (3) 신청내용 <태양광발전소 건설>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마장리 17-20(1구역)
 - 사업내용
 - 태양광발전설비용량 : 98.58KWp
 - 태양광전지판(모듈) 설치 : 547.02m²(2개)
 - ※ 1개당 규격 : 8.95m*30.56m(273.51m²)
 - 시설물 높이 : 8.947m(건물 5.8m 포함)
 - 건축물(축사)현황
 - 건축면적 : 545.48m²(1동:272.74m²/2동:272.74m²)
 - 연면적 : 545.48m²(1동:272.74m²/2동:272.74m²)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03/문화재전문위원 ○○○)

- 신청지는 파주 소령원·수길원 문화재 구역으로부터 남서측으로 약102m 떨어져 있음
- 기존 축사 건물 지붕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자 신청한 사안임
- 역사문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36.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건립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371호 「강화 곤릉」 주변 단독주택 건립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곤릉 주변에 단독주택을 건립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곤릉(사적 제371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산75번지

(3) 신청내용 <단독주택 건립>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도면 길정리 229-8(1구역/문화재로부터 190m 이격)

○ 사업내용

- 부지면적 : 788㎡

- 건축/연면적 : 131.58㎡/ 131.58㎡

- 규모 : 1동, 1층, 철근콘크리트조, 한식기와

- 최고높이 : 5.7m

- 석축쌓기 : 143㎡(H=0.5~4m / 절토고 3.6m, 성토고 4m)

라.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절·성토구간의 석축부분은 화계형태로 하여 자연석 허튼층쌓기로 처리하고, 석축면은 식재를 통해 차폐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3명

37. 속초 조양동 유적 내 대형 안내판 설치

가. 제안사항

강원도 속초시 소재 사적 제376호 「속초 조양동 유적」 내 대형 안내판 설치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속초 조양동 유적 내 대형 안내판을 설치하고자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속초 조양동 유적(사적 제376호)
 - 소재지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29외
- (3) 신청내용 <대형 안내판 설치>
 - 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529외 1필지(문화재구역 내)
 - 사업내용 : 홍보용 대형 안내판 설치
 - 크기 : 가로 17m, 세로 1.6m
 - 위치 : 청초호 방향 경사면

라.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38. 강화 외성 내외 잡목제거 및 왕벚나무 식재

가. 제안사항

인천광역시 강화군 소재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내외에서 잡목제거 및 왕벚나무 식재를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화 외성 내외에서 넝쿨식물 및 잡목을 제거한 후 왕벚나무를 식재하고자 신청한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강화 외성(사적 제452호)
 - 소재지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
- (3) 신청내용 <잡목제거 및 왕벚나무 식재>
 -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용정리 1087, 878-1(문화재구역 내외)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1,100m²
 - 대상지 입목 전량 벌채 후 왕벚나무 식재(2열로 열식)
 - 벌채 : 총 60주
 - 아카시아(수고 8.0m, 흉고직경 12cm) : 15주
 - 떨구슬나무, 참나무류 등(수고 8.0m, 흉고직경 16cm) : 45주
 - 식재 : 왕벚나무(수고 3.0m, 흉고직경 6cm) 24주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1.20/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대상지는 강화 외성 지정구역과 현상변경허용기준 1구역으로 서측은 해안도로와 접하며 동측은 재활용선별장과 염하 건너 문수산성이 위치하고 있음
- 성토된 뚝에 식생하는 아카시아 등 수목을 제거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미관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역사문화환경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강화외성을 따라 교목류의 화려한 가로수의 식재는 전체 강화외성의 경관관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며, 기존 수목의 제거로 인한 시설물의 노출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부결 13명

39.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490호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을 위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 초당동 유적 주변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행위가 문화재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3년 13차(11.13) 사적분과 심의 결과, ‘현 기숙사와 급식소 권역에 대한 보존관리 대책수립과 연계, 재검토’ 사유로 보류된 건으로, 강원도 강릉교육지원청으로부터 해당 권역에 대한 보존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재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초당동 유적(사적 제490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84-2 등
- (3) 신청내용 <강릉고등학교 체육관 신축>
 - 위치 : 강원도 강릉시 초당동 57-2 외 1필지(1구역/문화재구역과 연접)
 - 사업내용 : 체육관 신축
 - 대지면적 72,000.05㎡, 건축면적 8,324.45㎡, 연면적 18,943.25㎡
 - 최고높이 18.95m(2층)

라. 참고자료

(1) 현지조사 의견('13.10.25/ 문화재전문위원 ○○○)

- 초당동 유적에 연접하는 체육관 신축 부지에 대해서는 지하 유구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발굴조사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체육관 신축 부지 바로 옆에는 현재 기숙사·급식소가 건축 중에 있으므로 체육관 신축이 사적지 주변의 역사문화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생각됨
- 다만, 현재 기숙사와 급식소가 있는 지역은 2014년으로 예정된 철거 이후 역사적 경관 보호를 위해 보존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발굴조사 후 사업 실시
 - 현 기숙사·급식소 권역은 철거 후 잔디를 식재하고, 문화재구역에 대해서는 이를 알리는 안내판과 경계휀스를 설치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조건부가결 11명, 부결 2명

40.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

가. 제안사항

경상북도 경산시 소재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 공동주택 신축을 위하여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주변에 공동주택 2동 및 관리사무실 1동을 신축하고자 현상변경 허가 신청한 사항임
- 지난 사적분과 소위원회 회의('13.11.28) 심의결과에 따라 현지조사 후 재검토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사적 제516호)
 - 소재지 : 경북 경산시 임당동 676-1 등
- (3) 신청내용 <공동주택 신축>
 - 위치 : 경북 경산시 조영동 572-1번지
(1구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문화재구역에서 135m 이격)
 - * 1구역 : 건축물 최고높이 12m이하(단독주택용지), 18m이하(근생용지, 상업용지)
 - 사업내용
 - 사업면적 5,962㎡, 건축면적 1,542.86㎡, 연면적 5,993.6㎡
 - 지상 5층, 3동(공동주택 2동, 관리사무실 1동), 최고높이 16.9m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2.9 /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물은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의 문화재 구역에서 135m 이격된 1구역(단독주택 12m 이하, 근생·상업 시설 18m 이하)에 5층 규모 공동주택 2동(101동 건축면적 638.93㎡, 연면적 2546.40㎡ / 102동 건축면적 851.923㎡, 연면적 3395.2㎡)과 1층 규모 관리사무소(건축면적 52㎡, 연면적 52㎡)를 16.9m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문화재에서 인지되지 않으며, 부지가 주변보다 낮고 연결한 곳에 15m~20m 규모의 연립주택으로 둘러싸여 있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원안가결 13명

41.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강진군 소재 사적 제68호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현상 변경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진 고려청자 요지 주변 도예촌 분양단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 (1) 신 청 인 : ○ ○ ○
- (2) 대상문화재 : 강진 고려청자 요지(사적 제68호)
 - 소재지 : 전라남도 강진군 대구면 사당리 107번지 외
- (3) 신청내용 <강진 고려청자 요지 현상변경허용기준 조정(안)>

구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안)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 최고높이 8m 이하	○ 최고높이 11m 이하
4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 고시일을 기준으로 영향검토구역 내에서 관계법령(도시계획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포함)이 변경될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재조정토록 함	
공통사항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 개·재축 가능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지형을 2m이상 절토하는 행위는 개별 심의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의견('13.2.18/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강진 청자박물관 앞, 3구역(평지붕 8m, 경사지붕 11m)과 연접한 1구역(보존구역)은 2010년 문화재 영향검토결과에 따라 상하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 및 녹지공원 조성공사가 완료된 곳이므로 앞의 기 개발된 곳과 같이 3구역으로 조정 신청된 것으로서, 기존의 3구역에 건축된 건축물이 들어서 있어 문화재에서 잘 인지되지 않으며, 1984년 경지정리가 이미 완료된 상태였고, 지자체는 한옥으로 전통적인 도예 관련 시설군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강진 도요지의 활성화를 위해서 허용기준 조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단, 건축물의 형태나 높이에 관하여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도예촌단지(1,2차 분양용지)에 대해서는 '최고높이 11m 이하 한옥' 만 허용하는 별도의 구역으로 설정할 것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조건부가결 12명

42.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가. 제안사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울주 언양읍성의 추가지정('11.8.9)에 따라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을 조정하고자 신청한 건임

다. 주요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문화재명 : 울주 언양읍성(사적 제153호)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동부리, 서부리 일원

(3) 신청내용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 조정 필요성

- 사적 추가 지정('11년), 종합정비계획 수립('12년)과 읍성 남문 '영화루' 복원('13년)으로 주변 지역의 추가 건축 제한 기준 필요
- 현행 3구역의 허용기준 내용이 광범위하여 현상변경 허가 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바, 향후 객관적 기준 마련을 통해 민원의 신속한 처리 도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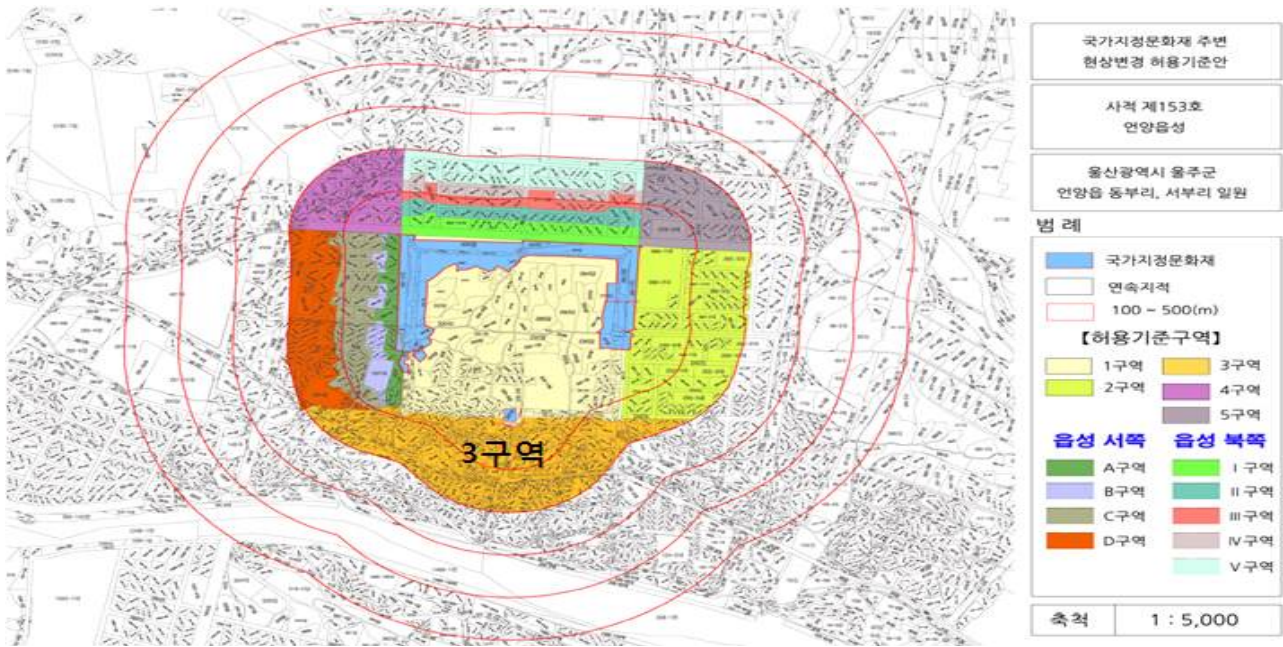
○ 조정 내용

- 현행 3구역의 허용기준을 아래 변경(안)과 같이 세분화(그외 구역은 변동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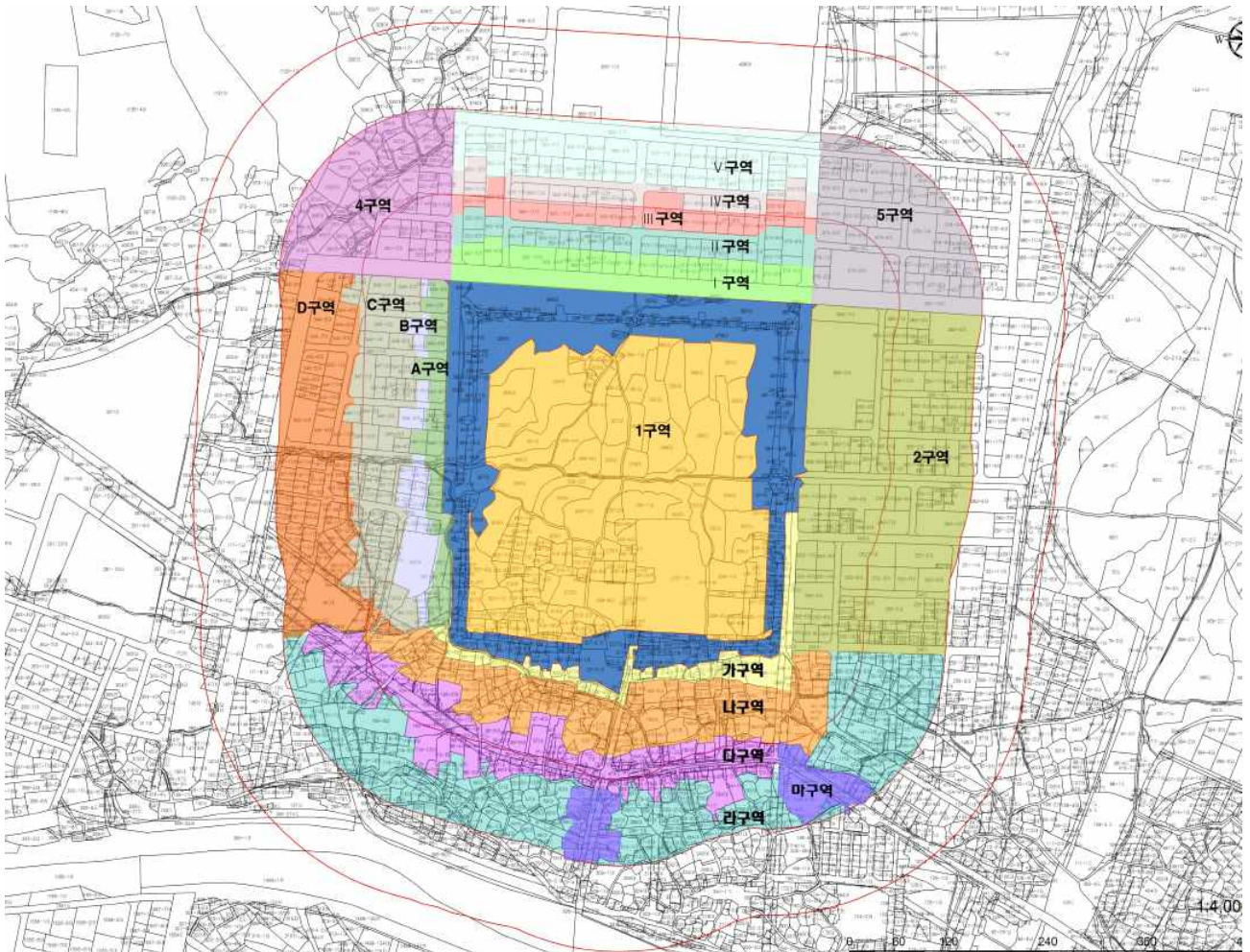
현행		변경(안)		비고
구분	허용기준	구분	허용기준	
제3구역	○ 향후 읍성 복원 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제3-가구역	○ 최고높이 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나구역	○ 최고높이 8.5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다구역	○ 최고높이 11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제3-라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평지붕 가능)	
		제3-마구역	○ 최고높이 14m 이하 (경사지붕, 10:3 이상)	

※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도면

○ 현행



○ 변경(안)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1.18/ 문화재전문위원 ○○○)

- 본 건은 울주 언양읍성 남측 구역의 추가 지정에 따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신설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현재 남문루인 영화루가 복원된 남측 체성부의 한 켜는 5m(1층 규모, 경사지붕), 그 다음의 한 켜는 8.5m(2층 규모, 경사지붕)으로 하며, 이러한 기준은 기존의 개별 현상변경에 적용해 왔던 기준이기도 함
- 또한 다음 켜의 가로변 양측도 가장 변화한 곳으로서 현황을 고려하여 11m(3층 규모, 경사지붕), 그 외 가로변에서 안쪽은 경사지붕과 평지붕 두 가지를 허용하면서 평지붕 11m, 경사지붕 14m로 허용한다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와 역사문화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될 것이라 판단됨

(2) 울주군, 주민의견 수렴 결과

- 공고기간 : '13. 8. 23~9. 11(20일간)
- 주민의견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157-10)
 - 언양읍성 영화루 건립으로 인하여 읍성 주변 주민 재산권 행사에 크게 저해되어 많은 불이익을 받으며 생활하는 바,
 -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중에서 '나'구역은 최고높이 8.5m 이하에서 9m 이하로 변경이 요구되며,
 - 언양읍성 B구역, II구역 등과 비교하여 '나'구역 면적이 지나치게 넓게 범위가 선정되었으므로 범위 축소가 필요함

(3) 울주군, 전문가 의견수렴 결과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울산과학대 교수/'13.11.7)
 - 언양읍성 남문의 복원으로 문화재보호구역이 확장되어 검토구역의 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됨
 - 가,나,다,라,마 구역으로 세분하여 기 개발상황과 문화재 보호를 상호 비교 검토한 것으로 판단됨
 - 전반적으로 언양읍성의 경관을 크게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준안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이 기준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울산광역시 문화재위원 ○○○(울산과학대 교수/13.11.7)
 - 영화루가 복원되어 검토구역의 조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재 개발되어 있는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그 상황을 반영한 검토구역의 조정이 필요함
 - 가 구역의 5미터 이하 경사지붕 설치 조건은 언양읍성의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기타 구역도 비교적 적절한 범주 내에서 설정한 것으로 생각되므로 이를 적용하여 검토해도 될 것으로 사료됨
- ○○○ 교수(동국대학교/13.11.7)
 - 읍성의 전면 진입구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역사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큼으로 전통건축 양식 건축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가’구역 : 문화재와 연접한 지역이므로 최고높이 7m 이하, 전통한식골기와 지붕잇기 건축으로 조정. 경주의 경우에도 한옥지구의 최고고도 제한을 7m로 시행하고 있음. 전통한옥 건축물은 용마루까지의 높이가 7m는 확보되어야 제대로 된 구조로 신축 가능함
 - ‘나’구역 : 경사 지붕건축 10m까지 허용
 - ‘다’구역 : 12m까지 허용

(4) 주요 추진경과

- ‘66. 12. 27 : 사적 제153호 지정
- ‘90. 5. 24/ ’08. 12. 10 : 주민민원과 시가지 확장으로 문화재 지정구역 축소
- ‘10. 12. 22 : 언양읍성 허용기준 고시
- ‘11. 8. 19 : 문화재 지정구역 추가 지정
- ‘12. 6. 27 : 언양읍성 종합정비계획 수립
- ‘13. 8. 19 : 언양읍성 남문(영화루) 복원

(5) 「울주 언양읍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현행)

구 분	허 용 기 준	비 고
1구역	○ 원지형 보존	언양읍성 내부
2구역	○ 언양읍사무소 및 63뷔페예식장 건물의 성벽쪽 서쪽 정면선을 건축선으로 기준하여 양각(1:5)비율을 적용 ○ 남쪽부는 사적으로 지정된 북쪽부와 같이 도로선을 조정 권고	언양읍성 동쪽
3구역	○ 향후 읍성 복원정비계획과 연계하여 건축 제한	언양읍성 남쪽
4구역	○ 읍성지 북쪽과 동일기준으로 하되, 인근 화장산 경관 보존을 고려, 최대 5층 규모이하로 함	언양읍성 서북쪽
5구역	○ 양각(1:5)비율 및 북쪽지역 기준을 참고하여 시행	언양읍성 동북쪽
A구역	○ 향후 도로지역으로 편입되도록 하고, 우선 도시계획 조정전까지는 부득이 1층 이하(높이 5m)로 규제	언양읍성 서쪽
B구역	○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서쪽
C구역	○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서쪽
D구역	○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서쪽
I 구역	○ 2층 이하(높이 7m)	언양읍성 북쪽
II 구역	○ 3층 이하(높이 10m)	언양읍성 북쪽
III 구역	○ 4층 이하(높이 13m)	언양읍성 북쪽
IV 구역	○ 5층 이하(높이 16m)	언양읍성 북쪽
V 구역	○ 7층 이하(높이 22m)	언양읍성 북쪽
공통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향검토구역 내의 기존건축물은 개·보수 가능 ○ 전체 구역에서 층수가 10층 이상 건물은 개별심의. ○ 문화재 보호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 지역에서 한 변의 길이 25m,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은 개별심의(단, 허용기준이 최고높이를 기준으로 평지붕 8m(2층), 경사지붕 12m(2층) 이하인 구역에 한함) ○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 지붕 색상 - 회색, 밤색 등).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 권장.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폐기물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 ○ 경사지를 성·절토하거나 평지를 성토하여 높이 3m이상의 법면,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는 개별심의.(지하층의 절토는 제외, 지반선의 높이산정 기준은 건축법에 따름)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 고시된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는 개별심의 ○ 도로, 교량 등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신설 및 확장은 개별심의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원안가결 12명

43.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 사적 제523호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여수 석보 주변에 대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 2013년도 사적분과 제3차(2013.3.13.) 심의 시 ‘소위원회 검토 후 재심의’키로 보류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여수 석보(사적 제523호)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868번지 외
- (3) 신청내용 <여수 석보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구분	현상변경허용기준(안)		특이사항 및 비고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1구역	○ 원형지 보존		○ 20m 이내 기존 건축물 개,보수 가능
2구역	○ 최고높이 8m (2층) 이하	○ 최고높이 12m (2층) 이하	
3구역	○ 여수시 도시계획 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용도관련	○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공장, 고물상, 도축장 등 유사시설은 개별심의 ○ 그 밖의 용도변경은 여수시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도로 및 기반시설 관련	○ 50m 이내 : ‘문화재 관계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거쳐 허용	
	건축물 최고높이	○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	
	매장문화재 관련	○ 봉계동 토성 등 매장문화재 주변에서 현상변경시 ‘문화재 관계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및 사전 허락을 득해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 절차 등을 거쳐 허용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외사항	○ 신청인 변경 ○ 동일 건축높이 내 허가면적의 10% 범위 건축면적/연면적 증가 (단 1회에 한함) ○ 동일 부지 및 동일 이격거리 내 건축물(시설물) 위치 변경	

라. 소위원회 개최

- 일시/장소 : 2013.12.4(수), 15:00 / 김제벽골제아리랑사업소
- 참석자 : ○○○·○○○ 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검토의견
 - 여수 석보는 2012년 06월 사적으로 지정되어 이에 따라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지역을 설정하기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건은 2013년3월 사적분과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소위원회의 검토로 위임되어 소위원회 위원 3인을 구성하여 검토하였음
 - 2013년 3월 사적분과 위원회에 상정된 내용 중, 1구역에 있어서 0~200m 범위까지는 절대보존구역으로 하고, 200~500m 범위는 농촌인 점을 감안하여 농가주택(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경우에 해당)만 허용하되 7.5m 이하 경사지붕으로 하고, 북측의 3구역으로 제안된 구역은 도시계획의 제1종 주거지역으로서 시·도 조례에 따라 5층 이하 건축물이 허용되는 구역으로서, 이곳은 별도의 구역으로 구성하면서 가로경관의 구성을 위하여 평지붕은 허용하지 않고 경사지붕 20m의 구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그 외의 구역은 2013년 3월 사적분과 위원회에 상정된 내용에 따른다면 합리적인 현상변경허용기준이 될 것이라 판단됨

마.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2.18/문화재전문위원 ○○○)

- 여수 석보는 2012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의 설정을 위해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작성하고자 하는 것임
- 여수 석보는 동측과 동북측에 8차선 규모의 석창교차로로 구획되어 있으며, 그 남측은 KTX 철도 노선이 약 12m 높이로 지나가고 있음
- 또한 남측·서측·북측의 도로 안쪽은 농경지로 되어 있으며, 여수 석보의 동측 진입부는 7층 규모와 2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이 있음
- 그리고 석창교차로의 좌수영로, 여수산단로 밖은 도로 북측에 일부 6층 규모의 건물이 있으나 대체로 2~3층 규모의 건물이 분포해 있으며, 동측의 가로변에는 4층 규모의 주유소·여수세무서·KTX 여천역 등이 있으나 대체로 2~3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남서측 300~500m 사이에 소규모 마을이 1~2층 규모로 구성되어 있음

- 따라서 여수 석보라는 평지보의 특성과 건축현황을 고려해 볼 때, 역사문화 환경 보존구역의 범위는 500m 이내로 하고 남측·서측·북측의 도로 내 농경지는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되 농가시설물은 허용, 남서측의 소규모 마을은 현황과 지형을 고려하여 2층 규모, 북측의 마을은 300m 거리가 떨어져 있고 기 개발이 되어 있어 경사지붕 3층 규모, 석창교차로의 좌수영로, 여수 산단로 밖의 가로변에서 50m 범위까지 경사지붕 3층 규모, 그 밖은 5층 규모로 조정한다면 여수석보의 역사문화환경과 현황이 조화를 이룰 것으로 판단됨

(2) 여수시 의견(전라남도 문화재위원 ○○○)

- 여수 석보는 현재 문화재구역이 성곽 및 해자와 바깥까지 포함되어 있어 일부 보호구역의 역할을 하고 있음
- 다만 석보 진입로 부근은 석창교차로와 맞닿아 있으며, 2층~5층 건물이 일부 들어서 있어서 문화재 보존 및 경관유지 차원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임. 향후 문화재 복원시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최선책일 것으로 사료됨
- 이에 이를 포함하는 부분, 즉 문화재구역 바깥 20m까지 원지형보존지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그 외 석보의 서·남·북쪽은 현재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서 높이를 2층 이하로 제한하고 보호구역도 필요한 만큼 설정함
- 동쪽은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으나 8차선 도로를 경계로 문화재구역과 분리되어 있어서 역사문화환경 보존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지 않음.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됨

바.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검토의견대로 시행
 - 여수산단로·시청로 서편 농경지는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되 200m 이상 이격된 구역은 농가시설(경사지붕)을 허용하고, 주택지는 현황을 반영하여 2층 이하로 제한하도록 함
 - 시가지가 조성된 동편은 도로변으로 3층 이하(경사지붕), 그 배후는 5층 이하로 제한하고, 토성 구역은 보존구역으로 설정하여 관리한다면 역사문화 환경 보호에 적정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주삼동 주민센터 주변지역은 도시계획 상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전남 문화재 조례에 따라 5층 이하 건축물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가로 경관 관리를 위해 5층 이하 경사지붕만 허용하는 구역으로 설정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조건부가결 12명

44. 파주 이이 유적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파주 이이 유적 사적 지정('13.2.21.)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제정하려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파주 이이 유적(사적 제525호)
 - 소재지 :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산5-1번지 등
- (3) 신청내용 <파주 이이 유적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신청(안)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 이상)
제1구역	○ 보존구역	
제2구역	○ 현상유지 ○ 기존건물 개보수 허용	
제3구역	○ 최고높이 5m(1층) 이하	○ 최고높이 8m(1층) 이하
제4구역	○ 최고높이 8m(2층) 이하	○ 최고높이 11m(2층) 이하
제5구역	○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준함.	
공통사항	○ 기존시설물 범위 내 개·재축은 허용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 높이로 함. ○ 도시계획조례 변경시 문화재청과 협의하도록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 의견('13.10.07./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파주 이이 유적은 조선 성리학의 토대를 닦은 이이선생을 배향한 자운서원과 이이선생 및 신사임당의 묘소를 포함한 가족묘역이 한 공간에 모여 있는 율곡 이이 관련 유적을 대표하는 곳으로 한 인물에 근원한 문화유산이 모인 장소성이 큰 의미가 있어, 2013년 02월21일 사적으로 국가 지정되어 보존 관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 하여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파주 이이 유적은 시·도 기념물 당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300m 로 정하고, 문화재와 연접한 주변의 임야를 1구역(심의구역), 파주 이이 유적의 입구와 동남측 공장이 들어선 구역은 2구역(현상유지, 기존건물 개보수 허용), 파주 이이 유적의 진입로의 오른편은 3구역(1층 규모), 마을이 들어선 왼편과 구릉 너머 논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일부 평탄지는 4구역(2층 규모)로 설정 되어 운영되어 왔음
- 사적의 국가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작성을 위해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바, 파주 이이 유적의 지정구역은 능선 안쪽을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300m 범위에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작성하되 300~500m 범위는 도시계획 및 관련법을 적용하는 지역으로 하여도 역사문화환경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300m 범위 내에서는 구릉 너머에 있는 북측과 동측의 전답은 도시계획 및 관련법을 적용하지는 지역으로 하면서 이를 제외한 임야를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으로 하고, 남측에 공장이 들어서기 시작한 구역 중, 문화재와 연접한 전답은 1층 규모, 이보다 먼 곳은 2층 규모로 하고, 파주 이이 유적의 진입로 상의 왼편 마을은 2층 규모까지 허용한다면 합리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단, 공통 사항에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협의가 필요하며, 공장 관련 시설 중 공해 유발 시설 문화재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는 조건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검토의견(설명자료)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조건부가결 10명, 원안가결 1명

45. 양주 대모산성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마련

가. 제안사항

경기도 양주시 소재 사적 제526호 「양주 대모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양주 대모산성 사적 지정('13.6.21.)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제정하려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양주 대모산성(사적 제526호)
 - 소재지 :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방성리 789번지 등
- (3) 신청내용 <양주 대모산성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 신청(안)

구분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 보존구역	
2구역	· 심의구역	
3구역	· 최고높이 11m이하(3층이하)	· 최고높이 14m이하(3층이하)
4구역	· 최고높이 14m이하(4층이하)	· 최고높이 17m이하(4층이하)
5구역	· 양주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 기존 건축물 및 시설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재 · 개축을 허용함 · 건축물 및 시설물 설치시 동 허용기준의 적용 경계는 건축선을 기준으로 하고, 건물 및 시설물의 일부가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되는 경우 하위지역 기준 적용(1구역과 2구역에 걸쳐있는 경우 1구역 적용) ·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분노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심의함 · 건축물 최고높이는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높이로 함	

라. 참고사항

(1) 현지조사의견('13.10.08./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양주 대모산성은 6~7세기에 축조된 고대 산성으로서, 2013년 06월21일 사적으로 국가 지정되어 보존관리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립하여 보존관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양주 대모산성은 시·도 기념물 당시 역사문화환경 보존구역을 300m 로 정하고, 문화재와 연접한 주변의 임야를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 산록의 전답 등은 2구역(경기도문화재위원회 심의구역), 동북측의 기 개발지는 3구역(평지붕: 11m 이하, 경사지붕:14m 이하) 이보다 더 먼 곳은 4구역(평지붕: 14m 이하, 경사지붕:17m 이하)로 설정되어 운영되어 왔음
- 사적의 국가 지정에 따른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작성을 위해 현지조사에서 검토한 바, 주변의 개발 가능성이 낮고 도시계획에서 정하는 지역의 설정이 4층 규모 이상을 넘지 않아,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300m 범위까지 작성하고 300~500m의 범위는 도시계획 및 관련법 적용 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300m 범위 내에서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은 현황과 기존 시·도 기념물 당시의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300m 범위 내는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으로 설정하되, 동북측의 기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구간은 현황을 고려하여 2구역(평지붕:11m, 경사지붕:14m)범위로 설정한다면 합리적인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됨. 단, 공통사항에 지자체의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의 삽입이 필요함

(2)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 문화제명 : 사적 제526호 「양주대모산성」

○ 의 견 :

양주 대모산성의 국가사적지 지정에 대해 양주의 시민으로써 먼저 축하와 자축을 합니다.

그러나 그로인해 불필요하고 과도한 보호규제로 인해 본인과 같은 해당지역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큰 피해가 올까 많이 염려스럽습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를 보호 하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혀 영향을 미치지않는 주변지역에까지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호구역이 되어 개인의 재산권에 각종 규제가 미치는등, 의 영향을 끼칠까 많이 염려스러우며 그러한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에서 본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양주 대모산성 허용기준도면”을 보면 문화제 영향검토 구역이, 이번 국가 문화제로 지정되면서 반경 500m 까지로 변경공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되는 부분이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지정으로 인한 “비합리적인 불필요한 규제”만 늘어나고, 이로인해 해당 거주자 및 토지소유자들에게 억울한 피해 만 가중시키는 잘못된행정 이라 판단되며, 공람된 영향검토구역에 적극 반대하며, 기존의 도 기념물 지정당시의 반경 200m 까지의 영향검토구역에서 더 이상의 추가 구역 지정은 안될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더더욱 기존의 반경 200m 보호구역의 재확인 지정 만으로도, 충분히 양주대모산성 문화재를 지속적으로 보호,관리 하여 후대에 자랑스런 문화제로 물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은 이지역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활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빗들과 함께 대모산성에 올라간 적이 수도 없이 많으며, 지금도 대모산성의 지도를 그리라면 그릴수 있을 정도로 눈에 휘합니다.

대모산성과 우리지역의 주변과 환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있게 주장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대모산성 문화제 영향검토구역을 200m까지만 검토하여 지정하여도 대모산성의 보호, 관리 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화제도 보호하고, 주변 해당 주민들도 불편함이나 피해가 없는 일거양득의 행정,,, 그것이 서로가 win win 하는 행정의 결과 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강력히 주장합니다.

기존 200m 까지의 보호 구역 외에는 어떠한 추가 지정도 하지말아 주십시오!!!

요즘 모든 국민들의 삶이 많이 힘듭니다.

경기가 안좋아 일반 서민들의 삶이 말로만 듣는 것 이상으로 궁핍해지고 있습니다. 일반서민들은 한치앞을 모르는 안개속 경제사정과 정국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새“정부에서도 각종 토지규제 등을 과감히 해제하고 탈피”하여 현정국을 벗어나고 국민들의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선의 각종 행정규제가 “불필요”하게 또다시 서민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우리 해당주민들은 어디서 희망을 찾아 가겠습니까?

다시한번 간곡히 주장하며 요구합니다.

더 이상의 기존 반경200m 이외의 어떠한 추가 보호구역도 지정하지 말아 주십시오.

귀 청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귀 청의 무한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본인은 관내 양주대보산성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13. 7. 3.

의견제출자 :

양주시장 귀하

마. 의결사항

- 조건부가결
 - 문화재청 현지조사 의견대로 시행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조건부가결 10명

46. 서울 탑골공원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에 대한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사항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문화재보호법 제27조 등에 따라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의 문화재구역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동 사항은 탑골공원 담장 밖의 문화재구역에 대해 해제하는 안으로 지정예고 (2013.1.24.)하고 2013년 문화재위원회 제3차 회의(‘13.3.13.)에서 심의하였으나 보류됨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탑골공원(사적 제354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종로2가 38-1번지 등
- (3) 신청내용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안)>
 - 적정성 검토(안)
 - 당초 지정면적 : 14필지 15,051㎡
 - 변경 지정면적 : 8필지 12,165㎡
 - 조정검토 사유 :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담장 외부를 지정구역에서 제외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2.11.14, 21 / 문화재위원 ○○○·○○○, 전문위원 ○○○)
 - 본 건은 탑골공원의 지정구역 중,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담장 외부를 지정구역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담장 내부만 지정하여도 근대 공원으로서 지정된 문화재의 가치는 저하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담장 외부구간의 도로는 지정구역에서 제외하고 현상변경허용기준에서 1구역(원지형 보존구역)으로 설정한다면 합리적인 조정안이 될 것이라 사료됨

(2) 지정예고 및 종로구(문화재관리단체) 의견

- 예 고 일 : 2013.1.24(관보 제17937호 / 문화재청 공고 제2013-22호)
- 예고기간 : 예고일로부터 30일 이상
- 예고결과 : 서울 탑골공원(의견제출자 : ○○○)
 - 우리구 종로2가 38-1 서울탑골공원 담장 외부는 현황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이곳은 오래전부터 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이 중복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지역이며, 특히 종로2가 39번지는 사유지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통행로 관계로 인하여 소유자의 보상요구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나 보상액이 과다하여 현재까지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토지보상 요구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해제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며, 합리적인 민원해결과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공공의 성격이 강한 현행 통행로를 그대로 유지하여 현재대로 문화재(보호)구역을 존치하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에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인 민원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사적 제354호 서울 탑골공원 지번별 면적조사

순번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지정 구역	조정(안)	소유자	주 소
1	낙원동	220-2대	39	39	-	○○○	
2	낙원동	220-4도	1,367	1,050	-	○○○	
3	종로2가	31-1도	119	119	18	○○○	
4	종로2가	31공	714	714	330	○○○	
5	종로2가	32-2도	6	6	-	○○○	
6	종로2가	37-1사	771	771	771	○○○	
7	종로2가	37-3도	983	373	250	○○○	
8	종로2가	37-4구	214	63	-	○○○	
9	종로2가	38-1사	10,231	10,231	10,167	○○○	
10	종로2가	38-2사	49	49	49	○○○	
11	종로2가	38-3사	39	39	39	○○○	
12	종로2가	38-4공	697	697	541	○○○	
13	종로2가	38-6도	643	643	-	○○○	
14	종로2가	39대	872	257	-	○○○	
계			14필지 16,744	14필지 15,051	8필지 12,165		

마. 의결사항

- 보류

- 종로구의 탑골공원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9명, 원안가결 1명

【 검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14-047

1.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검토

가. 제안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국가지정문화재(사적) 추가지정 신청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2권역, 3권역에 속하는 26필지 3,190m²를 추가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신청내용
 - 기존지정 면적 : 904필지 322,297.6m²
 - 추가지정 신청면적 : 26필지 3,190m²
- (4) 신청사유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풍납토성 정비에 중요한 지역이므로 사적 지정 필요

라. 참고사항

- (1) 국립문화재연구소 검토의견(2013.10.31, 2013.11.14, 2013.11.26)
 - 풍납토성 내 2권역(핵심권역)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은 사적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3권역(백제문화층 유존권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은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으로 향후 유적 보호가 필요한 지역임

서울 풍납동 토성 사적 추가지정 지번별 면적조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번 면적 (㎡)	지정 면적 (㎡)	소 유 자	
						성 명	주 소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126-60	대	102	102	○○○	
2	"	222-16	대	129	129	○○○	
3	"	222-147	대	139	139	○○○	
4	"	142-36	대	39	39	○○○	
5	"	142-113	도로	11	11	○○○	
6	"	221-29	대	172	172	○○○	
7	"	142-97	대	116	116	○○○	
8	"	131-12	대	102	102	○○○	
9	"	229-12	대	132	132	○○○	
10	"	227-39	대	194	194	○○○	
11	"	227-33	대	126	126	○○○	
12	"	86-1	대	112	112	○○○	
13	"	88-31	대	73	73	○○○	
14	"	88-34	대	83	83	○○○	
15	"	279-12	대	146	146	○○○	
16	"	141-21	대	96	96	○○○	
17	"	306-16	대	126	126	○○○	
18	"	222-109	대	188	188	○○○	
19	"	306-26	대	139	139	○○○	
20	"	94-12	대	106	106	○○○	
21	"	222-161	대	109	109	○○○	
22	"	306-69	대	172	172	○○○	
23	"	306-70	대	224	224	○○○	
24	"	306-71	도로	26	26	○○○	
25	"	155-34	대	196	196	○○○	
26	"	306-24	대	132	132	○○○	
합계				3,190	3,190		

마. 의결사항

- 원안가결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원안가결 10명

2. 화성 용릉과 건릉 정조대왕 초상 관련 유적 사적 추가지정 민원 타당성 검토

가. 제안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주변 정조대왕 초상 관련 유적 사적 추가지정 민원 타당성에 대해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태안 3지구 택지개발 부지에서 발굴조사 확인된 정조대왕 초상 관련 유적 사적 추가지정 민원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하는 사안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문화재명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효행로 481번길 21
- (3) 신청내용 <정조대왕 초상 관련 유적 사적 추가지정 민원 타당성 검토>
 - 사적 추가지정 신청면적 : 약300,000㎡
 - 재실터, 추정 정자각 터 등
 - ※ 민원제기 : ○○○(경기 화성시 용주로 135번지)

라. 참고사항

- (1) 현지조사의견('13.11.20./문화재위원 ○○○, ○○○, ○○○, ○○○, 전문위원 ○○○, ○○○, 한신대학교 교수 ○○○)
 - 2007년 12월 3일에 실시된 초상 관련 재실터 및 건물지에 대한 매장분과·사적분과 합동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재실터·(추정)정자각터·건물지에 대해서는 보존조치 하도록 함
 - 다만 보존조치 이후 확인된 정조 초상지 유적 전반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초상지에서 만년제에 이르는 역사문화경관이 보존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동권역 내의 기 현상변경허가(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09.7.13)받은 사업물량은 보호되어야하므로, 전체 사업권역 내에서 재배치하여 소화 하도록 권고함
 - ※ 한신대학교 교수 ○○○ 조사위원은 별도의견 제출

(2) 한신대학교 ○○○ 현지조사의견

- 사적지로 추가하자는 민원이 접수된 구(舊)건릉지는 1800년 건릉에 설치된 시설물들인 왕릉터, 정자각터, 재실터가 세계기록유산인 《건릉산릉도감의궤》의 기록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된 유적이므로 두가지 측면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세계문화유산으로서 완전성 진정성 회복의 측면

용릉은 원래 내외청릉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현재는 내청릉만 사적지로 보호하고 있을 뿐 외청릉은 방치상태에 있어서 조성 당시의 원형을 잃은 경우입니다. 최근 내청릉의 끝부분에서 건릉의 초장지가 확인되었는데, 용릉의외청릉 구역까지 사적으로 추가하여 만년제(경기도기념물)까지 이어지는 동선을 회복하는 것은 세계문화유산위원회가 요구하는 유적의 완전성과 진정성 회복, 용릉의 경관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2. 건릉 초장지와 부속시설의 가치보존의 측면

- 조선왕릉은 산릉도감에서 일정한 구역에 여러 시설을 한꺼번에 조성하는 유적인데, 현재 정조대왕의 초장왕릉터만 사적지 안에 있을 뿐 정자각터와재실터는 택지개발지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2007년 매장문화재분과에서 발굴조사 결과에 따라 재실지에 대한 사적지정 권고를 한 바도 있는데, 행정차원에서 부분적인 보존조치만 하게 되면 정자각터와 재실터 사이에 15m높이의 콘크리트 건물이 세워지게 될 것으로 경관의 훼손은 물론이고 향후 문화재 활용측면에서 심각한 제약요인이 될 것입니다.
- 구 건릉 유적지는 조선왕릉 조성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현상이어서 향후 조선왕릉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장소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적지로 추가한 뒤 향후 조선왕릉박물관을 건립하고 용릉과 건릉을 답사하며 조선왕릉 문화를 살펴보는 대표적인 장소로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 의결사항

○ 보류

- 2007년 12월 3일에 실시된 초장 관련 재실터 및 건물지에 대한 매장분과·사적분과 합동조사 결과를 근간으로, 재실터, (추정) 정자각터, 건물지에 대해서는 보존조치하도록 함
- 다만 보존조치 이후 확인된 정조 초장지 유적 전반의 역사성 등을 고려할 때 초장지에서 만년제에 이르는 역사문화경관이 보존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동 권역 내의 기 현상변경허가(태안3지구 택지개발사업, '09. 7.13) 받은 사업물량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전체 사업권역 내에서 재배치하여 소화하도록 권고함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보류 10명

3. 강릉 임영관 지정명칭 변경 검토

가. 제안사항

강원도 강릉시 소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정명칭 변경 요청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 강릉시에서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변경 요청한 건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사항임
- ※ 2013년도 12차 사적분과(10.16) 검토 결과, 지역 여론수렴 및 관련 학술대회 개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재검토하기로 보류된 건으로, 강릉시에서 관련 학술세미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재부의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 (1) 신청인 : ○ ○ ○
- (2) 대상문화재명 : 강릉 임영관(사적 제388호)
 - 소재지 : 강원도 강릉시 명주동 38-1 외
- (3) 신청내용
 - 명칭변경
 - 현행 :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 변경 :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 ※ (2안) 강릉부 관아(江陵府 官衙)
 - 명칭변경 요청 검토배경
 - 관아(官衙)는 조선시대 지방행정 기관이 위치한 읍치(邑治) 공간으로, 관아에는 수령의 정청인 동헌(東軒), 국왕의 위패를 모시는 객사를 비롯한 향청, 절청, 관노청, 군기청 등 지방행정 기구를 모두 갖추어 건립된 곳임
 - 강릉 임영관은 고려 태조 19년인 936년 강릉부의 객사로 창건된 이래 1929년 일제강점기 훼손되기 전까지 유지된 건물로, 훼손 이전에는 정청(正廳)인 전대청(殿大廳)을 중심으로 좌우 익사(翼舍)로 구성되었음. 전대청은 왕의 전패(殿牌) 또는 궐패(闕牌)를 모셔두고 지방관이 대궐을 향해 망궐례를 올리던 장소이며, 좌우 익사는 지방군현에 파견된 사신이나 외국 사신이 오갈 때 머물던 숙박 공간임

- 강릉 임영관은 일제강점기 국권 상실로 객사의 기능이 정지되면서 공립보통 학교로 활용되다가 관아시설과 더불어 훼손되면서 임영관 삼문만 남게됨
- 현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1994년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지정된 것이며, 2005년 구 강릉 시청사 부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관아 관련 유적이 확인됨에 따라 관아 건축의 귀중한 자료로 인정되어 지정구역으로 추가지정됨
- 강릉 임영관은 지난 2000년부터 추진한 복원사업에 따라 2006년 전대청, 중대청 및 좌우 익사가 복원 완료되었으며, 객사 전면인 동헌영역의 아문, 동헌 및 별당 등 복원사업은 2012년 마무리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복원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른 지역 향토 사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재의 지정명칭의 사용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2년 지정명칭 변경을 위한 학술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객사공간과 동헌공간을 포괄하는 명칭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이에 따라, 당초 지정명칭인 강릉 임영관은 객사공간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지방행정 공간으로서의 동헌공간을 포함한 읍치공간(邑治空間)을 아우르는 명칭으로는 부적합하여 용역 결과 및 전문가 의견 등에 따른 조선조 당시 지방행정 편제인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지정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라. 참고사항

(1) 지정명칭 관련 학술세미나 결과 ('13.11.21)

- 세미나 명 : '강릉 임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
- 주요내용

구 분	발표자	토론자
(주제 1) 강릉 관아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 (강릉원주대 박물관)	○○○ (관동대 박물관)
(주제 2)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 (관동대)	○○○ (울곡연구원)
(주제 3) 강릉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	○○○ (강릉원주대)	○○○ (강릉문화원부설 평생교육원)

○ 세미나 결과 (요약자료집 발췌)

강릉 입영관 및 관아의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을 위한 학술세미나는 강릉관아 유적의 발굴조사 현황과 과제, 근현대 강릉 도심의 변화상에 대한 고찰 및 강릉 대도호부 관아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세미나는 []의 사회로 강릉원주대학교 박물관 학예사 [], 관동대 [], 강릉원주대 []의 주제발표와 관동대학교 박물관 [] 학예연구실장, 울곡연구원 [], 관동대 [] 교수 및 참여 청중들이 참여하는 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세미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강릉은 공양왕 1년에 대도호부로 편제되었다. 이후 비록 名號의 陞降 사례가 있었으나 곧 복원되었고 조선 말기까지 강릉은 대도호부로서 위상을 확보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대도호부의 관아는 邑城으로 에둘러져 있었다. 이곳이 治所로 결정된 시기는 이 지방의 읍호가 '東原京'으로 승격된 고려 초기였다. 이 시기 치소는 이전되면서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전의 치소가 어디였는가는 분명치 않으나 치소의 이전은 邑號의 승격에 따른 결과로 보여지며, 이것은 나말의 혼돈한 시기에 지방사회를 발전적으로 이끌어 온 '溟州豪族'의 역할과 성과를 반영하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읍성의 형세는 북서쪽이 구릉지이며, 동남쪽은 남대천을 성 밖에 둔 평지에 구축되었다. 조선 초기 읍성은 土城이었으나 16세기 초반에 石城으로 개축되면서 높이 9척에 들레는 3,782척으로 토성에 비해 다소 규모가 축소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읍성에는 문루가 축조된 東·南門을 비롯해 4대문이 건립되었고, 간선도로가 이어지는 동문과 남문이 중심기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邑治 공간에는 관아의 각종 公廡, 鄉吏를 비롯한 官屬들의 생활공간인 읍성마을, 관아 庭園이 배치되었다. 이로서 읍치는 국가 권력과 수령의 통치권, 아울러 이 지방의 邑勢와 位格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 공간에 전승되는 고려시대 건축물인 '臨瀛館 三門'과 수령의 생활공간인 '內衙(七事堂)'에서 느낄 수 있는 웅장하면서도 절제된 단아한 멋과 품격은 이 지방의 위상과 풍토의식이 구현된 산물이라 의미를 가진다.

읍치 공간의 공해는 客舍·衙舍·倉으로 3대별 된다. 이러한 기능을 중시하는 구분법은 古地圖 상에서 조선후기까지 나타나고 있다. 또한 地理誌 상에서 각종 공해는 18세기 중반까지는 종류별 명칭만이 파악되었으나, 19세기에 이르러서는 종류별로 부속건물과 칸수를 비롯해 각 부서별 인원 배치 상황까지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조사양식의 변화는 조선후기 사회경제적 변화에 편승하여 관아의 기능이 세분화하고 나아가 읍치 공간의 건축과 조경 의식이 반영되는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서 읍치 공간은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39개 동의 공해와 2곳의 정원에 수령과 좌수를 비롯한 186명의 향리와 관속들이 배치되었으며, 읍성마을이 형성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규모를 古地圖 상의 배치도에 근거하면 客舍·衙舍·鄉廳·府司가 주요 공해로 부각되고 있다. 이들이 모두 읍성 내에 배치되었으면서도 각 공해별로 별도의 담장으로 에둘러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방사회 운영구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서 각각의 기능이 중시되는 데서 비롯된 결과였다. 즉 객사와 아사는 국가권력과 수령의 統治權의 상징적 공간이라면, 향청과 부사는 이 지방 양반 사족의 鄉權과 戶長을 비롯한 향리세력에 邑權의 상징적 공간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강릉대도호부의 읍성과 관아의 배치 구조 및 인적구성을 염두에 두면 이곳에 설정된 사적지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명명하는 것이 적합성을 가진다고 보겠다.

기존에 이곳은 사적 제388호의 명칭은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이었다. 이것은 객사 공간만이 사적지로 지정된 데서 비롯되었다. 즉 강릉 객사는 “임영관”이라는 別號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게 객사 공간을 넘어 내·외아를

비롯해 각종 공해가 배치되었던 공간을 포함하여 사적지가 확대 지정되었고, 이러한 형상 변경으로 그에 준하는 사적지 명칭 변경이 요구되기에 이른 것이다.

요컨대 새로이 확장된 사적지의 명칭은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가 그 적합성을 갖는다. 즉 그동안 전개해 온 복원사업은 조선시대의 상황에서 근거를 확보하였고, 만약에 추후 같은 사업이 계획될 수 있다면 역시 같은 시기의 상황에서 그 근거가 확보될 것임은 자명하다고 보겠다.

다만, _____에서 참석하신 청중께서는 ‘도호부’의 용어가 중국에서 이민족을 지배하기 위해 설치한 제도로써 이러한 용어를 쓰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였다. 이에 대해 도호부는 중국 唐代 屬地支配를 위해 설치한 기구였으나, 고려 성종대 처음 설치된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기구로 편제되어 기능을 해왔던 역사적 사실과 왕조실록 등 기록 자료를 근거로 설명하고 내용에 대한 수긍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에 대한 사적지 지정명칭 적합성과 관련된 학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와 토론 결과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사적지 명칭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수렴하는데 무리가 없었음을 밝혀 두고자 한다.

또한 지방관아 연구는 공해건물뿐 아니라, 읍치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향후로도 강릉대도호부 관아 유적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더불어 강릉읍성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발표자, 토론자 및 청중의 다수 공감대가 있었다.

(2) 관계 전문가 의견

< 문화재위원 ○○○ >

가. ‘강릉’ → ‘강릉대도호부’ 변경 관련

- 강릉의 행정명칭 연혁을 보면, 통일신라시대의 하서주, 명주도독부를 거쳐 고려시대에는 동원경, 명주도호부, 명주목, 삭방도, 경흥도호부 등의 명칭으로 변경되어 오다가, 고려말 공양왕원년(1389) 강릉대도호부로 승격하였음. 이후 조선시대에는 대도호부의 명칭이 지속되면서, 일시적으로 현으로 격하된 적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1896년 고종대까지 계속되었음
- ‘사적의 지정 명칭 부여에 관한 일반지침’에 의하면, 제6조(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제2항에, 궁터 관아 성터시설물 등 정치 국방에 관한 유적에는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명칭으로 표기한다”라 하였고 그에 따라 문화재청에서 지정한 관아 사적의 명칭 사례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음
 -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 전북 고창군
 -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 제주 제주시
 -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 충남 부여군
 -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鄉校) / 전북 김제시
 -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鄉校) / 전남 나주시
 -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 경남 거제시
- 이들은 모두 현, 목, 군 등 관아가 사용되던 당시의 지방행정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례에 따르면 강릉의 경우도 조선시대 관아로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던 대도호부의 행정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 대도호부는 부윤과 도호부사가 파견되는 읍의 중간에 해당하며 목사(牧使)가 되는 고을과 같다. 이곳 수령인 대도호부사는 정3품으로 부윤·목사와 함께 주로 문신이 임명되는 청환직이었다. 조선시대에는 안동, 강릉, 영변, 영흥 창원에 대도호부를 두었다.
- 그러나, 조선시대 행정 명칭에서 대도호부는 몇 되지 않고, 일반인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호부’라는 명칭이 자칫 신라가 한반도를 통일한 이후 당나라가 고려 옛 땅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 백제 옛 땅에 두었던 웅진도독부, 신라에 두었던 계림대도독부 등의 명칭을 연상하는 작용을 하므로, ‘도호부’라는 인식이 갖는 좋지 않은 이미지에 대한 우려가 있음도 부정할 수 없음

나. ‘임영관’ → ‘관아’ 변경 관련

- 임영관은 강릉 객사의 별칭으로 이 객사는 고려 태조 19년(936) 본 부(府) 객사로 총 83칸의 건물을 창건하고 임영관(臨瀛館)이라 하였으며 공민왕 15년(1366) 왕이 낙산사로 행차 도중 현액을 친필로 썼다고 전함
- 강릉시는 2012년까지 객사를 비롯한 관아, 즉 동헌과 별당 그리고 의운루 등을 복원하였고, 이에 따라 ‘임영관’이 객사 공간을 한정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새로 복원된 관아 전체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됨
-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의 지번 범위 속에 객사와 관아 들을 복원한 것이라면, 실제와 맞게 전체를 포괄하는 ‘관아’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봄
- 그러나, ‘관아’ 라는 평범한 일반명칭으로의 변경은 자칫 강릉시 史蹟의 특수성이 드러나는 “임영관” 이라는 명칭에 비해 어떤 영향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임
- 이상과 같은 관점에서, 일반 지침과 사실의 부합도 중요하지만 문화재 명칭 변경은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문화재위원 ○○○ >

- 현재 강릉 읍치 공간에는 객사인 임영관과 함께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臨瀛館 三門)’ (1962년 객사문으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 (1994년 강릉임영관지로 지정되었다가 2010년 명칭 변경),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七事堂)’이 있다. 국보 제51호 ‘임영관 삼문’은 고려 말엽의 건축물이고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7호 ‘칠사당’은 조선시대 건축물임
- 본 사안의 논의대상은 첫째 행정명칭의 부기 문제이고 둘째는 사적 대상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음
- 첫째 행정명칭은 고을의 지위에 따라 성곽이나 관아의 규모도 달랐으므로 가능하면 붙여주는 것이 필요하며, 모두는 아니지만, 기왕의 사적 명칭 부여에서도 일부를 제외하면 이를 준용하고 있다. 예컨대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濟州牧 官衙),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扶餘 鴻山縣 官衙),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金堤郡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羅州牧 官衙와 鄉校),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巨濟縣 官衙) 등이 그것으로, 이러한 관례를 따라 ‘강릉(江陵)’ 보다는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명명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됨

- 둘째 사적 명칭과 대상 문제와 관련하여 객사 ‘임영관’은 단독 건물로 본다면 사적이기보다는 보물이 더 적합하나 최초 지정 당시는 건물이 아닌 객사 영역을 대상으로 ‘임영관지’로 사적 지정(1994년)됨. 그러다가 부속 건물지들이 발굴조사됨으로서 사적 구역이 확대(2005년)되고 복원이 이루어진 문화재임. 현재의 명칭 ‘강릉 임영관’은 이러한 복원에 따른 현상 변경에 따른 개정으로 ‘임영관지’에서 ‘임영관’으로 변경된 것임(2011년)
- ‘강릉 임영관’이라는 사적 명칭은 당초 객사 공간을 한정하여 지정된 것이나, 발굴조사와 복원사업으로 현재는 사적 구역이 확대 지정되어 객사인 임영관과 더불어 동헌, 그리고 칠사당 공간을 아우르는 영역이 되었음. 따라서 ‘강릉 임영관’의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기 보다는 이들 읍치공간(邑治空間) 모두를 아우르는 명칭의 사용이 필요함. 그리고 이 읍치 공간 전체를 함축하는 용어로서는 기존의 사적 지정명칭에서 관례적으로 사용하는 ‘관아(官衙)’가 적합하다고 생각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적 제388호 ‘강릉 임영관(江陵 臨瀛館)’의 명칭을 ‘강릉대도호부 관아(江陵大都護府 官衙)’로 표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3) 「강릉 임영관」 및 부속건물에 대한 문화재 지정 등 내역

일 자	구 분	내 용	비 고
1962.12.20	신규지정	「객사문」(국보 제51호)	
1971.12.16	신규지정	「칠사당」(시도유형문화재 제7호)	
1994.07.11	신규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1필지 8,423㎡	
2005.09.06	추가지정	「강릉임영관지」(사적 제388호) - 발굴조사 결과 발견된 관아지 추가지정(10필지 10,528㎡)	
2010.09.29	명칭변경	「강릉객사문」→「강릉 임영관 삼문」 - 임영관 삼문으로 변경, 띄어쓰기 적용	
2011.07.28	명칭변경	「강릉임영관지」→「강릉 임영관」 - 복원에 따른 ‘지(址)’ 삭제, 띄어쓰기 적용	
2012.10월	복원완료	(1차 복원) 2000~2006년 - 전대청, 중대청, 동대청, 좌우 익사 등 (2차 복원) 2007~2012년 - 동헌, 별당, 아문, 의운루 등	

(4) ‘사적의 지정 및 부여에 관한 일반 지침’ 발췌 (문화재청 예규)

조 항	내 용
제2조 (일반원칙)	<p>사적 지정 명칭 부여의 일반원칙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적 지정 명칭은 역사적 문헌, 고증, 또는 전래되어 오는 “고유한 명칭”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적의 소재지와 유형을 조합하여 명칭을 부여한다. 2. 사적 지정 명칭은 사적의 연대와 유형, 속성 등 주요 특징을 국민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부여한다. 3.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로 하고, 괄호() 안에 한자를 병기한다. 다만, 명칭과 한자를 병기할 시 ‘음’이 다를 경우 큰 괄호[]로 표기한다. 4. 사적 지정 명칭은 한글 맞춤법 띄어쓰기 원칙을 준수하되, 사적의 성격이 역사적 지역명과 결부될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
제3조 (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유형)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를 위한 유형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조 제1호에 따른 고유한 명칭(호를 포함한 자연인의 이름) 2. <u>고유한 명칭이 없거나, 다른 지역에도 동일 유형의 사적이 있어 지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시·군·구」+(읍·면·동·리)+사적명칭”을 기본으로 하되, 필요시 “「시·도」+(시·군·구)+사적명칭”으로도 할 수 있다.</u> 3. 당해 사적이 주변 환경을 포함하거나,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경우 사적명칭에 “일원(지구)”을 붙일 수 있다.
제4조 (지역명칭 표기 예외사항)	<p>사적 지정명칭의 부여 시 지역명칭 표기의 예외사항은 아래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술적으로 검증되고 역사적 의미를 간직한 지역명은 그대로 살려 쓴다. 2. 고증에 의한 지역명이 아니더라도 그 명칭이 이미 널리 알려져 논란의 여지가 없는 지역 명칭은 그대로 살려 사용할 수 있다. 3. 지역명이 사적명칭에 포함된 경우 별도의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4. 2개 이상의 지역이 연관된(포함)된 사적에는 지역 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5. 국가를 상징하는 문화유산은 지역명칭을 붙이지 않는다. 6. 지역명을 붙이지 않아도 명칭이 인지되는 경우, 안내판, 교통표지판 등에서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지정명칭 변경)	<p>사적 지정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변경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미 지정 되어 널리 사용하고 있는 사적 명칭은 가급적 현행 명칭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지역·문중·단체 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반드시 역사적 고증과 학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4. 행정적·교육적 제반 여건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5. 지정당시의 행정구역이 변경되어도 그 역사성을 고려하여 지역 명칭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사적의 역사적·학술적 검증을 통하여 변경된 행정구역이 오히려 타당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6. 지정 당시의 명칭이 “지”로 되어 있는 사적의 복원·정비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경우에는 복원의 진정성 등을 고려하여 명칭에서 “지”를 문화재위원회의 검토를 받아 삭제 할 수 있다.

조 항	내 용
제6조 (사적 유형별 명칭 부여기준)	2. 궁터, 관아, 성터, 성터시설물, 병영, 전적지 등의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 가. 궁宮(터), 전殿(터)에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나. 관아, 성곽, 진, 돈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사적 명칭으로 표기한다. 다. 병영, 전적지의 고유 명칭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 “유적”, “유허”, “전적”으로 표기한다. 라. 기타 정치·국방에 관한 유적은 “유적”이라고 사적명칭을 표기한다.
제7조 (기타)	제2조 내지 제6조에 의해 부여한 명칭이 해당 사적의 특성과 역사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재위원회(사적분과)의 검토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5) 유사 문화재의 명칭 부여 사례

종 별	문 화 재 명	소재지	현 황
사적 제346호	고창 무장현 관아와 읍성 (高敞 茂長縣 官衙와 邑城)	전북 고창군	객사, 동헌, 읍성
사적 제380호	제주목 관아 (濟州牧 官衙)	제주 제주시	관아건물 복원
사적 제481호	부여 홍산현 관아 (夫餘 鴻山顯 官衙)	충남 부여군	객사, 동헌
사적 제482호	김제군 관아와 향교 (金堤郡 官衙와 鄉校)	전북 김제시	동헌, 내아, 향교
사적 제483호	나주목 관아와 향교 (羅州牧 官衙와 鄉校)	전남 나주시	객사, 동헌 등 복원
사적 제484호	거제현 관아 (巨濟縣 官衙)	경남 거제시	객사, 질청

(6) 명칭 변경 반대 민원 ('13. 1월, 11월/ ○○○)

- ‘대도호부’라는 명칭은 고려, 조선시대의 지방 행정 기구로서 사용되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본래 중국에서 새로 정복한 이민족을 통치하기 위해 변경(邊境)에 설치했던 억압적·군사적 성격의 행정기구로서, 명칭 변경 시 중국에 의해 동북공정이란 미명 아래 우리나라가 중국의 속국이라는 증거로 사용될 우려가 높음

(7) 강릉시 연혁(신라~조선시대/ 강릉시 홈페이지 발췌)

구 분	연 도	내 용
신 라	397(내물왕 42년)	하슬라주(何瑟羅州)가 신라(新羅)의 영역(領域)이 됨
	512(지증왕 13년)	하슬라주 군주(軍主) 이찬(伊漣)라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을 정벌함
	639(선덕여왕 8년)	하슬라주를 북소경(北小京)으로 삼고 사창(沙倉) 진주(眞珠)에게 지키게 함
	658(태종무열왕 5년)	북소경을 파(罷)하여 하서주(河西州)로 삼고 도독(都督)을 두어 지키게 함
고 려	757(경덕왕 16년)	하서주를 명주(溟州)로 고치고 9군 25현을 둬 고려
	936(태조 19년)	명주를 동원경(東原京)이라 개칭하고 임영관(臨瀛館)을 세움
	940(태조 23년)	동원경을 다시 명주라 칭함
	983(성종 2년)	하서부(河西府)로 칭함
	986(성종 5년)	명주도독부(溟州都督府)로 개칭
	992(성종 11년)	명주목(溟州牧)으로 개칭 목사(牧使)를 임명
	1178(명종 8년)	연해(沿海) 명주도(溟州道)로 개칭
	1261(원종 1년)	경흥도호부(慶興都護府)로 승격됨
	1263(원종 4년)	강릉도(江陵道)로 개칭
	1308(충렬왕 34년)	강릉부(江陵附)로 개칭
	1388(우왕 14년)	교주(交州) 강릉도로 개칭
	1389(공양왕 원년)	강릉대도호부(江陵大都護府)로 승격, 별호를 임영(臨瀛)이라 함
조 선	1457(세조3년)	강릉대도호부에 진(鎭)을 설치하고 이부(二府) 사군(四郡)이현(二縣)을 관할함
	1666(현종 7년)	강릉대도호부는 강릉현으로 강등됨
	1675(숙종 원년)	강릉현을 다시 강릉대도호부로 복원함
	1782(정조 6년)	다시 강릉현으로 격이 낮아짐
	1789(정조 13년)	강릉부로 복원됨
	1895(고종 32년)	강릉부의 관할구역이 평해(平海)에서 흙곡군(翁谷郡)까지로 됨
	1896(고종 33년)	강릉군으로 개칭하고 21개 면을 관할함

마. 의결사항

- 보류
 - 사실관계 확인(건물 중건시기 등) 등 자료 보완 후 재검토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보류 13명

【 보고사항 】

안건번호 사적 2013-14-050

1. 서울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안)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등 소재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의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안)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울 한양도성의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임
- 2012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서울시장 공간, 혜화문, 흥인지문, 남소문지 지역의 단절구간을 연결하는 상부형상화 설계에 대하여 검토된 바 있으나
- 서울시는 한양도성자문위원회, 국제학술회의, 시민토론회 등 토론을 거쳐 성곽모습을 재현하는 상부형상화는 세계유산 관점에서 진정성 훼손 우려가 있어 일단 보류하고 한양도성 소실부분을 바닥에 표시하여 단절구간 연계성을 회복하는 계획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임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한양도성(사적 제10호)
 - 소재지 : 서울 종로구, 중구, 성북구 등
- (3) 보고내용 <서울 한양도성 단절구간 연계성 회복계획(안)>
 - 연계성 회복 추진 방향 : 기본계획 재수립(전구간)+사범사업 추진(8개구역 479m)
 - 기본계획 : 도성가치, 진정성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 모든 연결방법 검토
 - 대상구역 : 45개소 1,126m, * 사유지구간 4,001m 방향표시 포함
 - 시범사업 : 8개구역 479m, 단절 정보의 효과적 전단을 위한 주변 정비사업 연계 추진
 - 백악구간 : 서울과학고 앞 도로(25m), 시장공간 옆 인접도로(16m)
 - 흥인지문구간 : 흥인지문옆 도로(21m), 광희문옆 도로(42m), 장충체육관옆 도로(46m)
 - 남산구역 : 남산순환도로(110m), 힐튼호텔앞 도로(30m)
 - 숭례문 구역 : 숭례문 주변 도로(189m)
 - 지형회복사업(중장기) : 창의문 주변('14년), 남소문지 주변, 혜화문지 주변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2명, 접수 12명

2. 서울 풍납동 토성 보존관리 개선방안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사적 제11호 「서울 풍납동 토성」의 보존관리 개선방안을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 풍납동 토성의 합리적 보존·관리와 주민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문화재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1.9월부터 운영 중인 풍납토성 보존관리 소위원회에서 검토된 사항을 보고하는 사항임
- 현재 ‘풍납토성 보존관리를 위한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연구’(‘12.11~’14.2/서울시·송파구)가 진행 중이며
- 이번 보고를 통해 풍납토성 보존관리에 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 진행 중인 연구를 보완하고 향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함으로써 풍납토성이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주민과 상생하는 문화유산이 되도록 할 계획임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
- (2) 대상문화재 : 서울 풍납동 토성(사적 제11호)
 - 소재지 : 서울 송파구 풍납동 일원
- (3) 보고내용 <풍납토성 보존관리 개선방안>
 - (기본기조의 전환) 토성 내부 전체 주민 이주에서 우선 핵심지역(2권역)을 이주시키고, 기타지역은 주민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기본기조 전환
 - (도시계획적 지원방안 선정) 2권역+5권역 및 2권역+3권역 통합개발, 역모기지 도입(2권역 등), 살기좋은마을만들기(3권역 일부)를 잠정 결정
 - ※ 송파구 내 결합개발은 수용지와 송출지간 이해관계 조정, 송파구 주민의 비용 부담 문제 등, 송파구 외 결합개발은 법 개정 선행 필요 문제로 실현가능성 낮음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1명, 접수 11명

3. 경주읍성 성곽 및 동문정비공사 추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상북도 경주시 소재 사적 제96호 「경주읍성」 성곽 및 동문정비공사에 대한 추진 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하고자 합니다.

나. 보고사유

- 경주 읍성 성곽 및 동문정비공사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 (1) 보고자 : ○ ○ ○
- (2) 대상문화재명 : 경주읍성(사적 제96호)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일대
- (3) 보고내용 <경주읍성 성곽 및 동문정비공사>
 - 사업예산 : 2,061,076천원(국비 1,297,860천원, 지방비 763,216천원)
 - 설계금액 : 9,072,190천원
 - 사업내용 : 동측 성벽정비 384m
 - 원형 성벽 중 일부 유실된 성벽의 내탁부 부분 보수
 - 기 보수 구간의 체성 높이를 조정 및 여장 설치
 - 성벽복원(H=3.9~4.3m) 및 문루복원(정면3칸, 측면2칸, 팔작지붕)
- (4) 추진경과
 - '09. 01월 :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
 - '10. 6. 18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시행(1차)
 - '12. 12.30 : 1차 자문결과에 따른 성곽지 발굴조사 완료
 - '13. 1. 25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시행(2차)
 - '13. 6. 03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시행(3차)
 - '13. 6. 13 : 설계도서 작성을 위한 자문회의 시행(4차)
 - '13. 11. 29 : 제12차 설계심사위원회 현지 개최(조건부 승인)

(5) 향후 계획

- 설계도서 보완 : '13. 12월 말
- 공사 착수 : '14. 1월 말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3명, 접수 13명

4. 선릉 내 장애인 경사로 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사적 제199호 「서울 선릉과 정릉」 내 선릉 장애인 경사로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서울 선릉과 정릉의 선릉(성종왕릉) 능침 관람로를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 장애인의 문화재 관람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 문화재 : 서울 선릉과 정릉(사적 제199호)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5-4

(3) 신청내용 <선릉 장애인 경사로 정비>

○ 위치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35-4

(문화재구역 내, 선릉 성종왕릉 우측 능침 관람로)

○ 내용

- 기간 / 공사비 : 2014. 2월 ~ 2014. 4월(130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공사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 공사안내판 1개소
- 식재공사 : 콩배나무 1주 이식, 국수나무 100주 식재
- 시설공사 : 경사로 데크(L=56.61m, W=2.2m), 경사로 안내판 2개소, 목책 20경간, 핸드레일 22경간, 배수로정비 35.3m, 경사로 진입판 2개소, 마사토 포장 132㎡, 성토 12.8㎡, 절토 3.8㎡, 계단 (H1.5m) 1개소
- 철거공사 : PP로프 울타리 및 목책 철거 37경간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결과('13.11.18, '13.11.27/문화재위원 ○○○, ○○○ 한국장애인개발연구원)

- 기존 관람로에서 경사 8% 이상에 대한 구간에 데크 설치
- 경사로 시작 지점은 관람동선을 앞쪽으로 연장하여 지형훼손 최소화
- 일반 관람객 편의상 기존 관람동선에 계단설치
- 경사 기준에 적합한 구간은 기존 지면을 활용하되 지면정비
- 구조물 차폐계획 수립
- 배수체계는 상부 데크 시작지점에서 노면 중앙으로 우회하여 배수
- 데크 재질과 색상은 우드하드(강재)와 갈색계열로 계획수립
- 핸드레일 난간은 높이 85cm, 상부 능침부분은 목책으로 설치
- 상부 목책은 기존 능침하부 목책 울타리와 동일한 규격, 재질로 할 것
- 난간 형 핸드레일의 간살 숫자를 줄일 것.
- 데크 시작과 끝 부분은 완만하고 미끄럽지 않게 할 것.

(2) 추진경과 및 계획

- '13. 10. ~ 11. 실시설계용역
- '14. 02. ~ 04. 선릉 장애인 경사로 정비공사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9명, 원안가결 1명

5. 고양 서삼릉 내 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사적 제200호 「고양 서삼릉」 내 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조선왕릉 능제복원 기본계획에 의거 서삼릉(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주변의 참나무류 등 낙엽활엽수를 제거하고 소나무를 식재하여 조선왕릉 역사경관을 회복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1) 신청인 : ○ ○ ○

(2) 대상 문화재 : 고양 서삼릉(사적 제200호)

○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삼릉길 223-126

(3) 신청내용 <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

○ 위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산37-1 일원

(문화재구역 내 / 희릉, 예릉, 효창원·의령원 능침 주변)

○ 내용

- 기간 / 공사비 : 2014. 2월 ~ 2014. 10월 / 432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공사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2동, 공사안내판 4개소, 사업안내판 2개소
- 벌목공사 : 참나무 등 792주 제거
- 식재공사 : 소나무 등 919주 식재

라. 참고사항

(1) 관계전문가 자문('13.2.22. / 문화재위원 ○○○·○○○)

- 능침 경관에서 적정한 이격거리 설정 필요 예)능침 곡장에서 10m
- 수계 지형 변화 등을 이용하여 설계하고 보완식재는 소나무를 중심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함
- 능침주변 잣나무는 단계적 제거를 검토
- 관목 및 아교목층 등 다층식생을 고려하되 산불이 염려되면 산식보다는 균식으로 설계
- 효창원·의령원은 일부 참나무 제거 및 생태를 고려하되 작은 수목들은 점진적으로 제거
- 참나무시들음병 피해목은 우선 제거하고 피압을 주는 수목 또한 제거 검토
- 건물이나 소나무 생육에 지장을 주는 수목은 가지치기 또는 벌목
- 고사목, 피압목은 수고, 근원을 고려하여 가지치기 및 벌목하고 외래도입 수종은 제거
- 예릉은 피압을 주는 나무는 숙아서 제거
- 효창원·의령원의 사초지 주변 잣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끊어진 소나무림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음

(2) 추진경과 및 계획

- '13. 02. ~ 04. 실시설계용역
- '14. 02. ~ 09. 역사경관립 조성 공사

마. 의결사항

- 원안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집수 9명, 원안가결 1명

6. 서울 태릉과 강릉 내 태릉 수영장 철거지역 조경정비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재 사적 제201호 「서울 태릉과 강릉」 내 수영장 철거지역 조경정비 공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태릉 능역 내 불법 시설물인 수영장의 구조물과 시설물 철거를 완료하고 그 지역의 원형 회복을 위해 조경정비를 시행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 문화재 : 서울 태릉과 강릉(사적 제201호)
 - 소재지 :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 (3) 신청내용 <태릉 수영장 철거지역 조경정비>
 - 위치 : 서울 노원구 공릉동 산223-19 태릉과 강릉 내
(문화재구역 내 / 사격장 진입부 수영장 철거지)
 - 내용
 - 기간 / 공사비 : 2014. 2월 ~ 2014. 4월(90일) / 200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공사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 공사안내판 1개소
 - 벌목공사 : 메타세퀘이아, 벗나무, 양버즘나무 등 231주 제거
 - 식재공사 : 소나무, 때죽나무, 생강나무 등 887주 식재, 야생화 19,710본 식재
 - 폐기물공사 : 부지 내 잔존 포장재 걷기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13.11.13./문화재위원 ○○○, 문화재전문위원 ○○○)
 - 현장의 주변식생을 조사하여 경관의 연속성과 조화를 고려할 것
 - 다층구조로 식생계획(상층, 중층, 하층)
 - 기존 혼효림은 낙엽활엽수 보강 식재로 하고 전체적으로 송림으로 조성
 - 외래수종과 원예식재 수종은 제거

(2) 추진경과 및 계획

- '13. 10. ~ 12. 실시설계용역
- '14. 02. ~ 04. 조경정비 공사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9명, 원안가결 1명

7.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계획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화성시 소재 사적 제206호 「화성 용릉과 건릉」 내 용릉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정비공사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보고사유

- 능침의 배경으로 소나무 띠가 형성되지 않고 주맥에서 연결된 송림이 미흡한 용릉의 능침주변을 정비하여 경관을 개선하고 원형을 회복하고자 함

다. 보고내용

- (1) 신청인 : ○○○
- (2) 대상 문화재 : 화성 용릉과 건릉(사적 제206호)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
- (3) 신청내용 <용릉 능침주변 역사경관립 조성>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산1-1 내
(문화재구역 내 / 용릉 능침 주변)
 - 내용
 - 기간 / 공사비 : 2014. 2월 ~ 2014. 4월(90일) / 250백만원
 - 공사내용
 - 가설공사 : 컨테이너 가설건축물 1동, 공사안내판 1개소, 사업안내판 1개소
 - 벌목공사 : 리기다소나무, 참나무 등 489주 제거
 - 식재공사 : 소나무 483주 식재

라. 참고사항

- (1) 관계전문가 자문('13.11.18. / 문화재위원 ○○○·○○○)
 - 소나무림 경관이 돋보일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활엽수림을 제거하거나, 수종 갱신하는 계획을 수립
 - 능림은 소나무 단순림, 인공림으로서 본래의 모습을 감안하여 적극적인 조성계획을 수립
 - 주산은 기존 소나무와 연계되도록 확대 조성 필요, 잣나무 등 경관과 조화되지 못하는 수목은 정리 검토

(2) 추진경과 및 계획

- '13. 10. ~ 11. 실시설계용역
- '14. 02. ~ 04. 역사경관립 조성 공사

마.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9명, 원안가결 1명

8.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2차 소위원회 결과보고

가. 보고사항

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제3항에 따라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제12차 소위원회 처리안건 심의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나. 소위원회 개요

- 일 시 : 2013.11.28(목) 14:00~17:15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참석위원 : ○○○, ○○○, ○○○, ○○○, ○○○, ○○○
- ※ 불참 : ○○○
- 회의안건 : 사적 주변 현상변경 허가 심의 36건
- 회의결과 : 원안가결 14건, 조건부가결 10건, 부결 5건, 보류 7건

다. 처리내용

연번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신청내용	심의결과
1	사적 제56호 고양 행주산성	경기 고양시	○○○	지역난방 열배관 개선공사	○ 조건부가결 - 관계기관 입회하에 공사 실시
2	사적 제299호 화성 제암리 3·1운동 순국유적	경기 화성시	○○○	석호필(스코필드) 박사 동상 설치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	사적 제315호 청주 홍덕사지	충남 청주시	○○○	다세대주택 신축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4	사적 제427호 부여 왕흥사지	충남 부여군	○○○	골프장 조성 (허가사항 변경허가)	○ 원안가결

연 번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신청내용	심의결과
5	사적 제26호 경주 원성왕릉	경북 경주시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신축	○ 조건부가결 - 관리동은 전통한옥으로 건축할 것
6	사적 제55호 영주 소수서원 등	경북 영주시	○○○	상수관로 매설	○ 조건부가결 - 유물산포지는 시굴조사, 그 주변은 관계기관 입회 조사 후 실시
7	사적 제112호 아산 이충무공묘	충남 아산시	○○○	단독주택 신축	○ 원안가결
8	사적 제126호 진도 용장성	전남 진도군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9	사적 제128호 양주 회암사지	경기 양주시	○○○	농지부지 조성	○ 원안가결
10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등	인천 강화군	○○○	엘리베이터 증축	○ 조건부가결 - 기존 교회건물 색상과 동일하게 외관을 마감 처리 할 것
11	사적 제132호 강화산성	인천 강화군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2	사적 제134호 제주 삼성혈	제주 제주시	○○○	민속자연사박물관 편의시설 신축 등	○ 원안가결
13	사적 제140호 오산 독산성과 세마대지	경기 오산시	○○○	단독주택 진입도로 개설 및 지하수 개발	○ 원안가결
14	사적 제153호 울주 언양읍성	울산 울주군	○○○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사무실) 신축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연번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신청내용	심의결과
15	사적 제163호 경주 낭산	경북 경주시	○○○	단독주택 신축	○ 원안가결
16	사적 제189호 충주 임충민공 충렬사	충북 충주시	○○○	다가구주택 신축	○ 조건부가결 - 지붕 마감재는 기와로 할 것
17	사적 제227호 강화 광성보 등	인천 강화군	○○○	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로 조성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18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충남 홍성군	○○○	연립주택 신축	○ 조건부가결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 형태로 할 것
19	사적 제292호 김포 덕포진	경기 김포시	○○○	슬로푸드 박물관 신축	○ 조건부가결 - 지붕형태는 경사지붕으로 할 것
20	사적 제316호 서산 보원사지	충남 서산시	○○○	단독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원안가결
21	사적 제360호 남양주 휘경원 등	경기 남양주시	○○○	봉선사 건물 건립	○ 원안가결
22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	연립주택 건립 (허가사항 변경허가)	○ 조건부가결 - 현상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것에 대하여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할 것
23	사적 제367호 남양주 영빈묘	경기 남양주시	○○○	단독주택 건립	○ 부결 - 지형이 훼손되는 등 역사문화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24	사적 제382호 여주 고달사지	경기 여주군	○○○	고달사 사찰 신축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연번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신청내용	심의결과
25	사적 제390호 경주 보문동 사지	경북 경주시	○○○	단독주택 신축	○ 원안가결
26	사적 제417호 괴산 송시열 유적	충북 괴산군	○○○	다가구주택 신축 (허가사항 변경허가)	○ 원안가결
27	사적 제431호 홍성 홍주의사총	충남 홍성군	○○○	단독주택 신축	○ 조건부가결 - 홍성군 지도를 통해 차폐 식재 보완
28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 강화군	○○○	농가주택 건립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29	사적 제452호 강화 외성	인천 강화군	○○○	용정리 재활용선별장 내 대형폐기물 적재부지 조성	○ 보류 - 대체부지 확보 및 적재 방안 개선안 마련 후 재검토
30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단독주택 신축	○ 원안가결
31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	단독주택(2동) 신축	○ 부결 -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훼손 우려
32	사적 제500호 용인 보정동 고분군	경기 용인시	○○○	수직구 및 가적치장 부지조성	○ 원안가결
33	사적 제514호 창녕 교동과 송현동 고분군	경남 창녕군	○○○	농가창고 신축	○ 원안가결

연 번	문화재	소재지	신청인	신청내용	심의결과
34	사적 제516호 경산 임당동과 조영동 고분군	경북 경산시	○○○	공동주택 신축	○ 보류 - 현지조사 후 재검토
35	사적 제519호 고흥 운대리 분청사기 요지	전남 고흥군	○○○	청소년 수련시설 등 조성	○ 조건부가결 - 시굴조사 후 재검토
36	사적 제525호 파주 이이 유적	경기 파주시	○○○	단독주택 신축	○ 원안가결

라.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9명, 원안가결 1명

9.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처리 보고

가. 보고사항

경기도 파주시 소재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식묘군」 주변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관련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15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음을 보고합니다.

나. 처리내용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48호 파주 덕은리 주거지 및 지식묘군	경기도 파주시	○○○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668-5번지(문화재 이격거리 400m) ○ 사업내용 - 사업부지 5,249㎡ - 총 10개동, 최고층수 3층, 최고높이 12.45m - 건축면적/연면적 : 1,265.7㎡/2,105.67㎡	허가	'13.12.02.
사적 제156호 부여 증산성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 증산성 주변 숲가꾸기사업> ○ 위치 : 충남 부여군 규암면 신성리 산69-2 (문화재구역에 연접) ○ 사업내용 - 사업면적 : 56,000㎡(숙아베기 56,000㎡, 산물임내정리 2,800㎡, 산물수집 22,500㎡) - 작업물량 : 숙아베기 약 2,636그루	허가	'13.11.21
사적 제193호 구리 동구릉	경기도 구리시	○○○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 ○ 위치 :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127 ○ 사업내용 : 변경 없음 ○ 허가사항 변경 내용 : 허가기간 연장 - 허가기간(당초):'12.12.18~'13.12.31. - 허가기간(변경):'12.12.18~'18.12.31.	변경허가	'13.11.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198호 고양 서오릉	경기도 고양시	○○○	<p><군관사 신축(허가사항 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 : 변경없음 ○ 허가사항 변경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번(당초) : 용두동 산17-23외 14필지 - 지번(변경) : 용두동 251-131번지의 15필지 ○ 사유 : 지적현황 및 지번정리작업에 의한 대지경계선 변경 	변경허가	'13.11.22
사적 제231호 홍성 홍주읍성	충남 홍성군	○○○	<p><홍성 홍주읍성 내 홍주읍성 남문복원 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411-2 등 ○ 사업내용 <p><당초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문복원 1식(면적 39.06㎡), 남문 진입로 계단(L=2.4m, H=4.41m) 및 성문 진입로 계단(L=2.0m, H=3.96m 2개소) - 성벽복원 : 길이 55m, 여담 8타 설치 - 기타공사 : 아스콘 해체 후 흙고화 포장 (1,104.89㎡) 등 <p><변경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사업내용 : 상동 - 설계변경사항 : 소광장 조성(16.5m×21m), 진출입로 포장(122m×4m) 및 잔디식재 (122m×1.2m), 자연석 배수로 설치 122m, 문루 전돌 여장 설치(2타) 등 	변경허가	'13.11.08
사적 제238호 영주 순흥 어숙묘	경상북도 영주시	○○○	<p><상수관로 매설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경북 영주시 순흥면 태장리 94-1 일원(4구역/이격거리 320m)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관로 매설공사 (L=1,008m) ·토공 : 터파기 1,257.8㎡, 되메우기 481.8㎡ ·관부설공 : 내충격수도관 D50mm, L=1,008.0m ·포장공 : ASP 포장 파취 및 복구 (T=65cm), A=3,024.0㎡ ·부대공 : 1식 	허가	'13.10.4
사적 제271호 경희궁지	서울 종로구	○○○	<p><경희궁지 내 발굴비석 설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치 :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 2-1 - 문화재구역 내(박물관 야외전시 공간)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석 1기 설치 	허가	'13.11.21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	<p><물품보관창고 신축>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면 서내리 145 (문화재구역) ○사업내용 - 면적 : 33.93㎡ - 높이 : 4.4m - 양식 : 초가 - 구조 : 굴도리 3량가</p>	허가	'13.11.14
사적 제302호 순천 낙안읍성	전남 순천시	○○○	<p><전통혼례 시행> ○위치 : 전남 순천시 낙안읍성 동헌 일원 (문화재구역) ○사업내용 - 일시 : 2013.11.24(일), 13:30~14:30 - 혼례자 : 신랑 이충희, 신부 최민지 - 예상하객인원 : 200여명</p>	허가	'13.11.21
사적 제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	전남 완도군	○○○	<p><농로 및 배수로 정비> ○위치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죽청리 103 외(문화재보호구역 등) ○사업내용 - 죽청리 · 농로 콘크리트 포장 L=82m, B=3m · 배수로 : 벤치플룸관 L=146m - 장좌리 · 농로 콘크리트 포장 60㎡ · 배수로 : 벤치플룸관 166m, 흙관 12.5m, 집수정 3개소</p>	허가	'13.11.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311호 경주 남산 일원	경상북도 경주시	○○○	<p><인성교육체험장 운동장 배수설비 및 기타공사></p> <p>○ 위치 : 경북 경주시 탑동 676-2 (2구역/이격거리 260m)</p> <p>○ 사업내용 : 담장 및 교문설치, 운동장 유공관 매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취 114m³, 구조물터파기 1,058m³, 되메우기 484m³, 잔토처리 688m³ - 배수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수정 3개소, U형 플룸관 16m, 유공관매설 377m - 구조물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문설치(B=8m) 1개소, 투시형담장(H1.2×W2.0) 110m - 옹벽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형 옹벽(H=1.2~2.0m) 110m - 포장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스콘+콘크리트포장(T=25cm, A=290m²) · 인터로킹블록포장(T=8cm, A=222m²) · 마사토 포장(T=15cm, A=3,050m²) · 화강경계석 설치(150×150) 42m 	허가	'13.12.6
사적 제341호 김해 대성동 고분군	경남 김해시	○○○	<p><시설물 설치></p> <p>○ 위치 : 경상남도 김해시 대성동 434번지 일원(지정구역 내)</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 면적 630m², 규격 : H22m*B24m, 1점(성탄 트리) 	허가	'13.11.21.
사적 제437호 파주 칠중성	경기 파주시	○○○	<p><조림사업></p> <p>○ 위치 :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 산59-1번지(이격거리 404m)</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부지 3,979m², 소나무 식재 1,200주 	허가	'13.12.02.
사적 제460호 공주 수촌리 고분군	충남 공주시	○○○	<p><공주 수촌리 고분군 주변우량농지 조성></p> <p>○ 위치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384</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구역에서 약 220m 이격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량농지조성 : A= 약 826m², H=약 1.5m 	허가	'13.11.26

문 화 재	소재지	신청인	사 업 내 용	처리결과	처리일자
사적 제492호 광양 마로산성	전남 광양시	○○○	<p><초등학교 건립(허가사항 변경허가)></p> <p>○ 위치 : 전남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산76-1 외(문화재구역으로부터 345m 이격)</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지 : 학교부지 18,793㎡, 완충녹지 2,967.4㎡, 체육장 4,675㎡ - 건축물(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적 : 건축면적 3,097.69㎡ 연면적 9,914.60㎡ · 높이 : 17.45m(지하1층, 지상 4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일부 철골조) - 기타 : 녹지, 주차장(69대), 옥외쉼터, 놀이터, 모래사장 등 <p>○ 변경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방지웬스 설치 : 5m(H)×80m(L), 2개소 - 허가기간 연장 : 당초 2014.6.30까지, 변경 2015.2.28까지 	변경허가	'13.11.19

다. 의결사항

- 원안접수
- 의결정족사항 : 출석 10명, 접수 9명, 원안가결 1명